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편람

2025. 12.

경기아트센터 안전감사실

|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

경기아트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성실히 운영하며, 모든 임직원이 법규 준수와 윤리적 책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차별과 불공정을 배제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합니다.
-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불공정 행위와 법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강화합니다.
-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모두는 CP 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협력사와 함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일동

CONTENTS



㉠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 선언문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소개 _ 1

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이란?	2
2. CP는 우리 모두의 의무	4
3. CP도입의 필요성(기대 효과)	4
[참고] CP등급평가제도	4
[참고] 국가계약법령과 공정거래법규의 적용	5

제2장 아트센터의 CP _ 6

1. 아트센터의 CP운영	7
2.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리스크 :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9
[참고] 주요 3개 법률의 법 집행 비중	13

제3장 업무 가이드(Do&Don't) _ 14

제1절 거래단계별 업무 가이드	15
1. 계약체결단계	15
2. 계약이행단계	17
3. 대금지급단계	18
4. 계약종료단계	19
제2절 주요 법령 및 조문별 업무가이드	20

제4장 행위별/부서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위반 주요 사례 _ 25

제1절 [전사공통]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26
1. 개요	26
2. 거래거절	28
3. 차별적 취급	29
4. 경쟁사업자 배제	32
5. 부당한 고객유인	33
6. 거래강제	34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37
8. 구속조건부거래	48
9. 사업활동 방해	50
10. 부당한 지원행위	51
Q&A: 불공정거래행위	57
제2절 [발주부서]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58
1. 개 설	58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59
3. 입찰담합	64
4. 정보교환 행위	69
5. 제재와 자진신고제도	71
6.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73
Q&A: 부당공동행위	74
제3절 [계약/발주/시설관리부서] 불공정 계약 행위(약관법)	75
1. 약관법 개요	75
2. 약관의 편입통제	76
3. 약관해석의 원칙(해석통제)	77
4.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 심사 기준	78
5. 약관의 규제	96
Q&A: 약관법	99

제4절 [계약/발주부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관리책임(하도급법)	100
1. 하도급법의 개요	100
2.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107
3.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109
4. 하도급거래 이행단계에서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115
5.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에서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123
6. 기타 의무 및 금지행위	126
Q&A: 하도급법	128
제5절 [사업부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표시광고법)	129
1. 표시광고법 개요	129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요건 및 유형	130
3. 범위반시 제재 유형	131
4. 업무가이드(Do&Don't)	132
Q&A 표시광고법	133
[첨부 1] 공정위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135
1. 개요	135
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36
3.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형	136
[첨부 2]	137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137

0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CP) 소개



0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소개

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이란 조직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규정 제정, 편람 마련, 임직원 교육, 감독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라 함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 소관 13개 주요 법률, 시행령, 고시 등 법규 전체를 의미

1.1 CP의 8대 도입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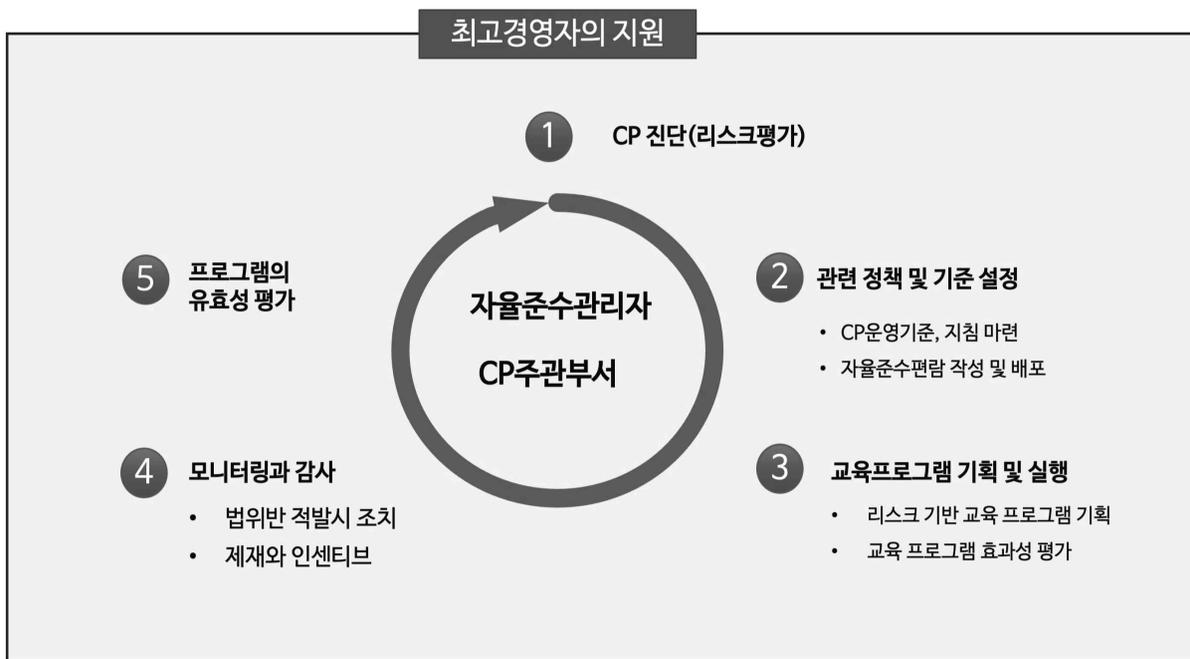
CP는 조직이 자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지만, 공정위가 CP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를 CP의 8대 요소 혹은 8대 도입 요건이라고 합니다(「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 2024-25호)」 제3조(CP의 도입 요건) 참조).

[표 1] CP의 8대 도입 요건

	기 준	내 용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최고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 마련·운영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실시, 개선조치

CP의 8대 요소를 조직내에 구현하는 것을 CP의 도입이라고 합니다. 즉 최고경영자의 지원하에 자율준수 관리자 및 CP주관부서 등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및 감사를 실시한 후 CP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발견한 후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이 갖고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파악해야 하므로 CP도입을 위한 활동으로는 첫 번째가 공정거래 리스크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존의 준법활동과 뭐가 다른가요?

조직은 CP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준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활동들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의 준법활동과 CP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법 준수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조치를 이미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보통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법규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공정거래 법규 위반 예방이라는 목적 아래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CP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라는 목적 아래 조직의 준법 활동이 의도적으로 기획되고 체계화되어 수행됩니다. 따라서 준법 활동의 체계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조직의 CP의 수준이 정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정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CP는 우리 모두의 의무

CP는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요? CP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에 의해 전사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법규는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지 CP주관 부서만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기획, 실행 및 점검과 개선은 담당부서가 필요하고 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전담부서, 즉 CP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이 전담부서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장 CP조직도 참고)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법규 준수의 주체로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주관부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CP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3 CP도입의 필요성(기대 효과)

CP운영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라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지만 조직이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수행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조직 내에 자율준수문화를 이루어 조직과 임직원 모두를 보호합니다. 조직은 브랜드 가치의 보호, 사회적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으로 외부의 평가 및 조직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고 임직원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형사 제재 및 이로 인한 실직,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도입·운영 매뉴얼(공정거래위원회, 202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공기관의 CP도입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p.14).

-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예방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 (공정위 조사 및 법원 소송 대응 관련 비용 및 시정조치 등에 따른 과징금 비용 등 최소화)
-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 주도 (입찰, 도급, 과견업체 등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공정위 CP등급평가 인센티브(우수 이상) (과징금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참고 CP등급평가제도

CP등급평가는 공정위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년 1회 신청기업의 CP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CP등급평가에서는 CP 8대 도입 요건을 CP의 구축, 확산, 운영, 평가라는 4가지 프로세스 관점에서 평가한 후,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 2] CP등급 평가 항목

평가차원	평가항목
I. Construction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1. 자율준수 편람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III. Operation (CP의 운영)	O1. 사전감시 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IV. Evaluation & Feedback (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표 3] CP등급 및 인센티브

CP등급 (유효기간 2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
			간행물 공표크기, 매체 수	사업장, 전자매체 공표		
AAA	15~20%	2년	2단계 하향	공표기간 단축	○	2년 연속 취득시
AA	10~15%	1년 6개월	1단계 하향		○	
A		1년				○

* 자진시정의 정도에 따라 5%의 추가 감경을 포함한 수치임

참고

국가계약법령과 공정거래법규의 적용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계약의 기준, 계약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하 “국가계약법령등”으로 약칭)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공정거래법규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법 제116조), 이 규정은 다음 두 가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됩니다.

1.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일 것
2.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일 것

따라서 국가계약법령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도 위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지방공공기관이 정한 내부지침은 당연히 적용제외가 되지 않습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행정규칙도 계약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만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기준 등과 무관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한 경우, 계약기준 등의 해석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게 유리하게 하여 적용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국가계약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2024년 11월까지 공정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약 260여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법규 해설을 위해 관련 사례를 이 편람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아트센터의 CP



02. 아트센터의 CP

1 아트센터의 CP운영

아트센터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정위의 CP도입 인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P를 CP의 8대 도입 기준에 따라 소개합니다.

[표 4] CP의 8대 도입 기준과 우리 기관의 CP

	기 준	운영 내용
1	CP 기준·절차의 마련·시행	CP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사장의 CP실천의지 공표, CP관련 조직 지정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 경영기획실장 박민제 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5	자율준수교육 실시	자율준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내부고발제도, 사전업무협의제도,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등
7	공정거래 법규 위반자 제재	공정거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CP운영규정)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주기적으로 CP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조치 실시

1.1 운영 조직

[표 5] CP 운영 조직

조 직	역 할
사장	CP와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자
자율준수관리자	안전감사실장(031-230-3430) CP운영의 총괄 책임자(사장의 임명)
CP주관부서	안전감사실(031-230-3432) 자율준수관리자의 명을 받아 CP업무 총괄

1.2 CP 교육과 자율준수편람

- 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CP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은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자를 사장과 관리자 또는 발주, 구매, 계약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밀접한 자로 한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 교육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원은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율준수편람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의 내용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실제 범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3 사전업무협의 조직과 절차

- 사전업무협의를 실행부서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P주관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협조를 거쳐야 하는 업무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사전업무협의를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다는 점 및 협의절차에서 CP주관부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업무협조와 구별됩니다.
- 사전업무협의를 내부심의를 위한 자율준수협의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1.4 신고 및 내부제보 제도

-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익명신고 헬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제도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내부제보의 경우,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내부제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5 CP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CP 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위반행위, CP 규정 위반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합니다(가벼운 위반행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경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기관의 징계 관련 규정에서 의합니다.

1.6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활동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는 우리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 및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기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기관의 공정거래 리스크: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공정위는 당초 경쟁당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4.1일 설립되었으나 그 이후 중소기업보호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소관 법률은 아래 [표4]에 열거된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총 13개 법률이 있으며 그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입니다(<http://www.ftc.go.kr>).

[표 7]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유형

구 분	해당 법률	공공기관 적용 여부
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공정거래법	일부 적용
중소기업보호	하도급법	일부 적용
	대규모유통업법	해당 없음
	가맹사업법	해당 없음
	대리점법	해당 없음
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	해당 없음(규제법률 아님)
	표시광고법*	일부 적용
	약관법	적용
	방문판매법	해당 없음
	할부거래법	해당 없음
	전자상거래법,	해당 없음
	제조물책임법,	해당 없음
	생협법	해당 없음(규제법률 아님)

*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목적 및 사업의 양태에 따라 표시광고법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나(실제 사례도 존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게는 해당이 없어 이 편람에서는 범위만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참고]로 수록함.

핵심

지방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공정거래 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경우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 특히 재단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만 가능하므로 13개 공정거래 법규 중 일부 법률 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은 사업자가 해당 업종 또는 사업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없으며,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생협법은 규제법률이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표 8] 공공기관의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

항 목	공정거래 리스크 내용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들러리를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사용을 특정하는 등 입찰담합의 교사·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조건 설정,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범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함. 최근 거래상대방의 범위반으로 인해 브랜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공급망관리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상대방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약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경우 약관에 의한 거래가 많아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관련 부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개별약정(특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본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추가하는 약정)이 약관의 내용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불공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표시광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시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과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거짓이나 과장에 대해 공공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면책되지 않으므로 표시 광고 시 증빙을 확인하여야 함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가 공공기관(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발한 건수(259건) 중 약 50%가 “거래상 지위 남용(129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이 “불공정약관조항(54건)”으로 약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는 적지만 최근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교사행위가 문제된 건도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 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의 의결서 검색 결과). 그 외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도 존재합니다.

특히 입찰담합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입찰담합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사의 하도급거래를 감시)을 강조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편람은 공공기관의 범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가이드를 제시하고 한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충실하게 수록하였습니다.

1) 공정거래법의 적용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규제 내용은 크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규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구조 개선은 시장이 경쟁적인 구조, 즉 사업자 수가 많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고, 거래행태 개선은 ‘거래 방식’이 경쟁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 9] 공정거래법의 규제 체계 및 규제 내용

규제체계	규제 목록	규제 내용
시장구조 개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 일정한 유형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금지
	경제력집중억제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을 통하여 경제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
거래행태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간의 합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사업자가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적용할 가격(재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규제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규제

- 시장구조 개선 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게는 적용이 없으며 거래행태개선 규제 중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는 공공기관이 유통망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사업자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없습니다.
- 거래행태 개선 중 부당한 공동행위(교사 및 방조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2) 약관법의 적용

- 공공기관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둔 계약조건, 즉 약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관법이 적용됩니다.
- 약관법의 규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조항(6조~14조)이 계약조항에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3조), 약관교부 요청에 대한 교부의무(3조)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10] 약관법의 구성

장제목	조문 목록
제1장 총칙 (1조~5조)	약관법의 제정 목적(1조) 및 용어 정의(2조)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3조), 개별약정 우선 원칙(4조) 약관의 해석원칙(5조) 등을 규정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6조~1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일반 원칙(6조) 개별적인 불공정약관조항 목록(7조~14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적용 제한(15조) 및 일부 무효 특칙(16조) 규정

장제목	조문 목록
제3장 약관의 규제 (17조~23조)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 사용을 금지(17조)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규정(17조의2) 관청인가약관(18조) 약관의 심사청구(19조) 표준약관의 제정과 관련된 내용(19조의3)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 절차 규정(20조~23조)
제4장 분쟁의 조정 (24조~29조의2)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 및 조정기구 규정
제5장 보칙 (30조~31조의2)	적용범위, 공정거래법의 준용 등
제6장 벌칙 (32조~33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관련 규정

3) 하도급법의 적용

- 하도급법은 제조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사업자가 제조업, 건설업, 용역(공정위가 고시한 업종에 한정)을 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법에서 별도로 발주자로서의 수탁사의 거래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적용됩니다. 다음은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요건입니다(원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수탁사, 수급사업자는 수탁사의 거래처가 될 수 있습니다).
 -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이 경우 합의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는데 발주자가 이러한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받고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받은 날에 3자간의 직접지급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 ③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공공기관이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이 없어 하도급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편람에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 거래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요 3개 법률의 법 집행 비중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주요 3개 법률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조정신청의 대부분을 차지(2023년 분쟁조정 접수관련 총 3,481건 중 2,755건(약 79%)) (자료출처: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현황		
	2022년	2023년	증가율
공정	1,085	1,372	26
가맹	489	605	24
하도급	901	1,044	16
유통	28	29	4
약관	257	339	32
대리점	86	92	7
계	2,846	3,481	22

- 분쟁조정 신청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사업장 주소를 둔 신청인이 가장 많음(3,481건 중 1,020건, 29.3%).

(단위: 건, %)

구 분	접수현황			
	2022년		2023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712	25.0	828	23.8
인천	167	5.9	220	6.3
대전	71	2.5	105	3.0
대구	104	3.7	97	2.8
부산	165	5.8	192	5.5
광주	72	2.5	111	3.2
울산	60	2.1	61	1.8
세종	21	0.7	33	0.9
제주	28	1.0	29	0.8
경기	785	27.6	1,020	29.3
강원	58	2.0	76	2.2
충북	76	2.7	100	2.9
충남	106	3.7	105	3.0
전북	59	2.1	85	2.4
전남	63	2.2	81	2.3
경북	122	4.3	131	3.8
경남	170	6.0	194	5.6
기타*	7	0.2	13	0.4
계	2,846	100.0	3,481	100.0

* 기타: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03

업무가이드 (Do&Don't)



03. 업무가이드(Do&Don't)

제1절 | 거래단계별 업무 가이드

일러두기

업무 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 편람 제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CP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용어설명] 수탁사와 고객

공공기관의 거래상대방은 다음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수탁사: 공공기관의 사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고객: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임대차, 시설이용, 각종 지원사업 등)를 이용하는 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경우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는 수탁사에 해당되고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고객에 해당됩니다.

1 계약체결단계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은 입찰에 의한 것과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특히 주의할 행위와 수의계약 시 주의할 내용 그리고 공통적인 주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의한 경우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낙찰 가격, 낙찰자 등을 담합으로 결정하는 행위(입찰담합)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및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무효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담합 (p.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입찰을 가능케 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현을 하거나 관련 사업자와 접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입찰담합 (p.79)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모임을 갖고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CP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입찰담합 (p.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가입찰의 경우 낙찰자 및 낙찰가격이 결정된 후에 별도 교섭을 통해 가격 등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공기관이 하도급의 원사업자일 때 해당됨 	부당한 가격결정 (p.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자격을 불합리하게 특정사업자 또는 소수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별취급 (p.44)

1.2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을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공기관이 하도급의 원사업자일 때 해당됨 	부당한 가격결정 (p.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을 낮추기 위해 타사업자의 견적을 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가격결정 (p.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부서에서 계약대금을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의된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가격결정 (p.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계약으로 복수의 사업자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간에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별취급 (p.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1.3 공통 사항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사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p.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약관 설명의무 (p.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 이용자가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약관 명시 의무 (p.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영업장 비치, 홈페이지 게시, 직접 전달 등)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약관 명시 의무 (p.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내용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p.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약조항이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내용인지, 불공정한 계약조건인지 CP 주관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에게 금품의 제공, 기부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익제공 강요 (p.53)

참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예시 <공정위 약관심사 심결례 참고>

-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서상의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조건
- 계약체결 후 공공기관이 계약물량, 금액, 납기 또는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공사등을 중지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이에 응해야하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하는 조건
- 사후정산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산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
- 계약과 관련하여 사후에 감사원, 자체감사등 일체의 감사에 의한 판정으로 변상 또는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 귀책사유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
- 과업지시서등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꼭 필요하여 추가로 시공지시 한 경우 또는 관할관청의 인·허기등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거래상대방의 부담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
- 공공사업자의 자금사정등에 따라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
- 물품제조 또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성격이나 거래관행에 반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납품기한을 부과하는 거래조건
- 계약체결후라도 예정가격산정 또는 원가산정의 착오를 이유로 또는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가격이 타관서의 동종 물품구매가격에 비하여 고가임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위하여 증빙자료등의 사후 검토완료시까지 계약 금액의 일부를 유보하는 조건
-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행촉구등 사전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 거래상대방에게 판매계획과 목표량을 부여하고 그 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거래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2 계약이행단계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이 공공기관의 지위 남용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 및 금지행위는 위탁업무에 있어 공정한 거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약관 해석원칙 (p.92)
• 약관의 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약관 해석원칙 (p.92)
• 입점업체(예컨대 카페, 식당 등)가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달리 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영간섭 (p.61)
•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물량(과업량)을 줄여야 할 경우 수탁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사의 요청이 없어도 계약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선시공을 지시하고 계약은 사후에 체결하면서 기성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률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진척도에 비해 기성고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납품물량에 따라 납품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종납품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3 대금지급단계

- 공공기관은 실제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예산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 과오납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부당이익환수를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부당이익환수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사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금의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p.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사의 거래처가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될 경우 협력사에 대한 채권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p.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사로부터 대금 변동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었는지,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하자보증금과 별도로 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4 계약종료단계

- 계약종료가 된 이후에 발견된 사정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하자담보책임을 거래상대방에게 과중하게 부과하거나 공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가계산 착오 등 공공기관의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종료시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책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함이 발견되어 대체 또는 수리된 설비에 대하여는 그때부터 하자보증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 후 관리상의 부실에 의한 파손 등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 (p.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변경이나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동안 공사 준비를 위해 들인 비용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제2절 | 주요 법령 및 조문별 업무가이드

1981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범위만 사례를 분석하여 범위만 가능성이 높은 법령 및 행위유형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예시, 범위만 사례는 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전사 공통	공정거래법 (불공정 거래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① 거래거절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개시요청을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중단하거나 사실상 중단하는 경우)</p>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거래개시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른 목적(예컨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등의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CP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 거래를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거래거절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CP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문서로 접수된 거래개시 요청을 거절하거나 기존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신규거래처 확보 등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상 지위남용(일반)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 발주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③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이 상품·용역을 주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은 원칙적으로 거래 개시 전에 또는 동시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구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p>④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 설정, 기존 거래조건의 변경 또는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CP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조건 설정시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편람의 예시 내용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p>⑤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 생산 품목 또는 시설 규모 등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간섭하는 행위)</p>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와 2차 수탁사간 계약에 대해 공사가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경영권 침해). 특히 1·2차업체간 납품대금의 결정 문제는 해당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권 침해로 판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적을 받을 때 공사가 필연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명기(예: 제3자 참석한 회의록)해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구현(상생협력, ESG경영추진 등)을 위해 1차와 2차 수탁사간의 거래에 대해 개입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개입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해 명시적인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p>⑥ 부당한 지원 행위(계열사 등 다른 회사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p>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대여, 자산의 매매, 임대차 및 상품·용역 거래시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를 포함하여 다른 회사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거래의 목적물을 공급자 또는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열회사 등을 거쳐서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여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급여는 당사가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 또는 출자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관계없는 회사라면 밝아야 할 협상 절차를 반드시 밟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열사와 거래 목적물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할 때에 지원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도록 지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구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발주 부서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과당 경쟁금지나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간에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격과 관련된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의 발주 관련 임직원들이 응찰자들의 과당경쟁 방지 등의 명분으로 가격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응찰자들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입찰담합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하지 않도록 입찰의 전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및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입찰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 유형이기 때문에 담합의 외형만 갖추더라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담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보교환행위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어느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를 그 기업의 경쟁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사업자간에 담합이 발생할 경우 방조행위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간 모임에 불가피하게 참석한 경우 접촉 경위나 모임의 성격, 대화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 부서 / 발주 부서 / 시설 관리 부서	약관법 (불공정 약관조항 사용금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개별약정 우선원칙 및 해석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별약정은 체결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공공기관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체결시에 설명을 하거나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하거나 유리할 경우 그 근거를 반드시 검토하여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불공정약관의 사용 금지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3절 참조) 약관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 열거된 구체적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6조의 일반원칙에 의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제도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과 충돌하는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해 약관이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이 공정성의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부서 / 발주 부서	하도급법	직접지급의무 (발주자가 일정한 거래대상이 아닌 수탁사의 거래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사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탁사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사에 대한 채권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시 수탁사가 하도급거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협력사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SG, 자율준수 등의 목적으로 수탁사의 하도급거래 감시 활동은 장려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관련 업무 프로세스가 경영간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탁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사업 부서	표시광고법	허위과장광고, 기만비방광고 금지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 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CP 담당부서와 협의 합니다.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해야 합니다. 홍보물이나 광고물 작성시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 지 생각합니다.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 광고 대상이 되는 제품과 용역의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직원들로 소규모 점검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구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부당비교광고 금지	<p>[D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써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 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 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p>[Do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지도,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서는 안 됩니다.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04

행위별/부서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위반 주요 사례



작성 가이드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법규”의 준수를 위해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와 위반 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공정거래 리스크에 맞춰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작성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4. 행위별/부서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위반 주요 사례

전사공통

제1절 |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일러두기

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알아야 할까요?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힘을 남용할 경우에 해당되기 쉬운 행위 유형입니다. 소위 “갑질”과 직접 관련된 행위유형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공기관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되는 행위 유형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고 실제 공정위에서 법시행 후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 법규 중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 다만 실제 법적용가능성이 낮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범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미있는 것이라 여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범위반은 아닙니다(부당성에 대해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공정위에 신고가 되거나 직권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범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CP주관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 개요

1.1 개념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정한 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지원 등 9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29가지)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거래의 개념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대법원 2003두 10299)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되는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

용어설명 “정당한 이유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에 열거된 29개 세부 유형의 설명을 보면 당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행위유형(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염매 등)에는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행위 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위법으로 보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위법성을 부정하는 행위 유형에 사용됩니다.
- “부당하게”는 당해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유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나, 다만 그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만 위법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부당하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는 “부당하게”와 내용적으로 같으나 부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업계의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1.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표 1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 제1항)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1의2])	
제1호	거래거절	① 공동의 거래거절	② 기타의 거래거절
제2호	차별적 취급	① 가격차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② 거래조건차별 ④ 집단적 차별
제3호	경쟁사업자 배제	① 부당염매	② 부당고가매입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제5호	거래강제	① 끼워팔기	② 사원판매 ③ 기타의 거래강제
제6호	거래상 지위남용	① 구입강제 ③ 판매목표 강제 ⑤ 경영간섭	② 이익제공 강요 ④ 불이익 제공
제7호	구속조건부거래	① 배타조건부거래	②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제8호	사업활동 방해	① 기술의 부당이용 ③ 거래처 이전 방해	②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④ 기타 사업활동 방해
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② 부당한 자산·상품지원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를 29가지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상품·용역을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없고 경쟁사업자가 없다는 점에서 범위반으로 문제될 행위유형이 많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반 행위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 즉 소위 “갑질”로 정의할 수 있는 행위유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 거래거절

해설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품·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될 수 있으나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공동의 거래거절”은 적용사례가 없어 거래거절은 일반적으로 “기타의 거래거절”을 의미합니다.
- 거래거절은 1)거래개시의 거절 2)거래중단 3)거래내용의 현저한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시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예시 <공정위 약관심사 심결례 참고>

- ①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②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④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⑤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⑥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⑦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⑧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의 거래거절행위 사례

[사실관계]

2017년 10월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2018년 업무용 소프트웨어 표준 오피스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에서 G사가 적격심사를 통해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는 G사로부터 해당 입찰에 납품할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공급자증명원 발급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공정위 판단]

G사는 이 사건 입찰 관련 공급자증명원을 발급 받을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피심인으로부터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 받아 경상북도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었으나, 피심인이 공급자증명원 발급을 거절함으로써 G사는 이 사건 입찰에 탈락하여 피심인으로부터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G사에 대한 공급자증명원 발급을 거절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G사와의 MS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관련 거래 개시를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0-252호)]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사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거래개시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른 목적(예컨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등의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Do]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CP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 거래를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거래거절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CP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문서로 접수된 거래개시 요청을 거절하거나 기존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신규거래처 확보 등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차별적 취급

해설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차별적 취급에는 ①가격차별, ②거래조건차별, ③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및 ④집단적 차별의 4가지 유형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건이 원칙 위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사례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거래조건 차별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3.1 가격차별

해설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가격이란 상품·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 및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합니다.



예시

- ①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③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3.2 거래조건 차별

해설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이외에 수량·품질,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사업자에 대한 차별은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포함합니다.

예시

- ①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사례

(주)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신규 GS시스템 공급 거부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 골프존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2016년 7월부터 투비전을, 2018년 4월부터는 투비전플러스를 공급해온 반면 비가맹점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비전플러스보다 기능이 향상된 어떠한 신규 GS시스템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비가맹점에 대한 신규 GS시스템 공급 차별행위는 신규 GS시스템이 스크린골프장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비가맹점의 사업활동 곤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GS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타사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매출 감소가 대폭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체거래선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급 차별행위는 비가맹점들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비가맹점을 경쟁열위에 처하게 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가맹점이 가맹점으로서의 전환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사업활동 곤란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킬 소지가 있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범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처(스크린골프장) 서면 통지 및 과징금(5억원) 납부를 명하였다. [(주)골프존의 차별적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18-341호)]

3.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해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시

- ①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③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입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입가공 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④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은 조가선(배전전주사이에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해 연결 한 지지선)을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고 상단조가선은 (주)파워콤이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하단조가선은 (주)파워콤을 제외한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하여 3개 사업자에 한하여 선착순 신청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상 하단조가선에 각각 6개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파워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단조가선에는 전력통신용, CATV용, 회선임대용 등 용도 별로 각각 2선 이내로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워콤 이외 사업자가 사용하는 하단조가선에는 각 사업자별로 2선 이내로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통신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배전설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 (주)파워콤의 통신망 사용여부를 파워콤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록 하면서 (주)파워콤과 신청사업자 간에 (주)파워콤 통신망의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전설비의 사용승인을 허용하지 않고 (주)파워콤의 기설통신케이블의 용량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공동사용이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기술적인 검토를 한 후 배전설비의 사용가능 여부를 승인하고 있다. 반면 피심인은 (주)파워콤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통신망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록 하지 않고 배전설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

통신사업자는 통신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통신선의 보유 여부는 타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주)파워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사업자는 불리하게 되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자체 통신선을 구축할 것인지 또는 다른사업자의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할 지 여부는 수익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주)파워콤의 통신망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인정된다[한국전력공사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42호)]



3.4 집단적 차별

해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는 달리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 가능하며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실제 적용 사례는 없음).

예시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 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4 경쟁사업자 배제

해설

경쟁사업자 배제는 자기 상품·용역을 부당하게 염가로 판매하거나(“부당염매”) 또는 다른 상품·용역을 통상거래가격보다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부당고가매입”)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고가매입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사례는 없고 부당염매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예시

- ①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②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사례

이마트의 코카콜라 염매행위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 신세계백화점(이마트)은 경쟁업체인 (주)삼성테스코가 2000.8.30. 할인점인 홈플러스안산점을 개설하자 피심인의 안산점에 대한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2000.1월~10월까지의 안산점의

총매출액의 0.18%에 불과한 코카콜라(1.5리터) 상품에 대해, 홈플러스의 개점 하루전인 2000.8.29.부터 11.7.까지 약 2개월 동안 자신의 타지역 점포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달리 12회나 가격을 낮춰 구입원가(984.5원)보다 21.8%~65.5% 낮은 770원~340원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코카콜라 제품을 미끼 상품으로 내세워 구입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당기간 계속하여 판매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향후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였다(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01-33호)]

5 부당한 고객유인

해설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에 따라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기타의 고객유인 등 3개 유형이 있습니다.

예시

- ①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②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수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③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수하는 행위
- ④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⑤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⑥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사례

(주)제노스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사례

[사실관계]

심혈관 스텐트 등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피심인은 2016년 8월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여 19건의 다기관 및 단일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54개 병원에 3,756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첫째, 일반 상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의료기기를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의 선택이 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가격·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맞는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에 따라 의료기기를 선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보다는 의사 또는 의료기기 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선택 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 향후 금지 및 과징금(287,000,000원) 납부를 명하였다[(주)제노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261호)]

6 거래강제

6.1 끼워팔기

해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공급하는 주된 상품·용역을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할 때에 원하지도 않는 종된 상품·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예시

- ① 인기 있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②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③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사례

한국토지공사의 연계판매 행위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가 비인기토지인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 등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 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인기 토지인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 등 공동주택 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를 매입한 자에 대해서만 인기 토지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비인기토지'라 한다)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 등 공동주택지(이하 '인기토지'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 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들어,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사업 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비인기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연계 판매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사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장의용품 끼워팔기

[사실관계]
 청주의료원은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외부 장의업자의 장의용품을 장례식장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외부 장의업자의 장의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신을 다른 곳으로 모시고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의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장례행사를 치르게 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청주의료원이 장례식장 제공업무 외에 장의용품을 함께 취급하여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장례식장 이용과 장의용품 제공은 서로 별개의 상품이므로 장례식장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주의료원은 「장례식장 운영관리규정」에 장례식장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자기의 장례식장에서는 외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례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 이용시설인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제공하는 장의용품을 장례식장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유족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장의용품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99-246호)]

6.2 사원판매

해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점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시

-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②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③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④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례

신일전자(주)의 사원판매 행위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 신일전자(주)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증대, 부진재고 해소 등 경영실적을 개선할 목적 하에 주기적으로 자기의 임직원들에게 2013년 카페트 매트, 2014년 제습기, 2016년 제습기, 2017년 연수기, 2020년 전동 칫솔, 2021년 가습기 제품의 사원판매를 위해 판매 목표할당, 중간현황 비교점검, 실적의 인사평가 반영 예고 및 실행, 상품의 강제할당 등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첫째,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들은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은 물론 판매의 주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되므로 가격,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한 경쟁의 기회조차 잃게 된다.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임직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구매할 필요가 없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피심인 임직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상품의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의 비교 및 분석이 아닌 해당 임직원과의 대인관계에 구속되어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도 있다. [신일전자(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 2023-048호)]

6.3 기타의 거래강제

해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기타의 거래강제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거래상대방인 총판을 매년 평가하면서 수능 연계교재 매출규모가 수능 비연계교재 매출 규모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능 비연계교재 매출에 대해가중치를 더 높게 설정하여 평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재계약 조건으로 삼는 방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수능 비연계교재를 총판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위 행위로 총판을 통한 수능비연계교재 매출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 복수거래가 허용되는 총판의 선택권을 제약하여 타출판사와의 거래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 피심인은 수능연계교재를 발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로서 학습참고서 시장의 약 19%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학습참고서 시장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재발방지, 행위중지, 서면통지 및 과징금납부를 명하였다[한국교육방송공사의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 2016-024호)]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7.1 개요

해설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금지행위 유형은 실제로는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부당한 힘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소위 거래상대방에 대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가장 큰 공정거래 리스크입니다.

참고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 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3두1646)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공공기관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발주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7.2 구입강제

해설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성은 직접적인 강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인식시켜 구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구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예시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②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도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사례

고객센터에게 특정 물품을 직원선물로 구입하도록 강제

[사실관계]

피심인(서울도시가스)은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2010년 12월 초순경에 주식회사 ○○○로부터 올리브 오일(단가 17,600원, 수량 798개, 총 구입액 14,044천 원)을 구입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송년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위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2011년 초순경에 같은 구입처로부터 케이크(단가 30,000원, 수량 716개, 총 구입액 21,470천 원)를 구입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설날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센터에게 특정 물품을 직원선물로 구입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서울도시가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2014-105호)]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Do]

- 거래상대방이 상품·용역을 주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은 원칙적으로 거래 개시 전에 또는 동시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7.3 이익제공강요

해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강요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심적 압박을 느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도 강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①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②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 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④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사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대납하도록 강요한 행위

[사실관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11건의 건설공사를 거래 상대방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0.부터 2014. 2. 5.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으로부터 총 11건, 19,76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를 삼성물산 등 11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2010. 7. 8.부터 2014. 4. 3.까지 대납하도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16-022호)]

사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행위

[사실관계]

(주)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23,400천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물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4천 원)의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가 첫째, 상품의 이전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매출을 일으킨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둘째, 피심인이 매장별·팀별 내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추석 등의 명절시즌에 집중적으로 허위매출을 발생 시킨 사실이 (주)농협유통의 담당 팀장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주)농협유통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19-010호)]

7.4 판매목표강제

해설

판매목표 강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이 판매목표 강제를 위한 수단이 되었는지가 문제될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인 협력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수준이라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 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②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③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④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과 상품·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례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 목표 강제

[사실관계]

씨제이헬로비전이 협력업체가 월간 디지털방송 700건, 인터넷 300건의 신규가입자 유치를 영업 목표로 확정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라 위 영업목표 달성에 관하여 매월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상 수수료에서 미달한 만큼 월단위로 건당 수수료를 차감한 액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수수료 산정 방식을 운영하였다.

[법원의 판단]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케이블방송 등의 설치, 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한 협력 업체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 제6호 (다) 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 목표강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甲 회사가 그 소속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인 乙 회사를 통해 협력업체 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한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대법원 2009두24108, 선고 2011.5.13.]

7.5 불이익제공

해설

불이익제공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 ①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②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③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④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⑤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⑥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⑦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⑧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⑨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⑩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성 거래거절)

사례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 수수료 인하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신이 관할하는 방송구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반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가입자 유지보수/설치/철거/영업/재약정/수금/해지방어 등 위탁용역' 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 전의 종전 계약은 2019년 1월경에 체결하였고 약정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그 후 피심인의 방만한 경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19년 12월 경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수수료를 인상하였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수료 미지급 총액이 123,530,000원이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약정기간 중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여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약) 제2024-091호)]

사례

서울도시가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서울도시가스)은 북부5 고객센터의 운영자인 강○○과의 사이에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은평구 불광 1, 2, 3동 및 진관내동, 진관외동 지역을 관할하기로 하는 고객센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북부5 고객센터 관할구역인 진관내동과 진관 외동의 은평뉴타운 1지구 지역에 아파트 4,660세대가 2008년 5월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자, 피심인은 북부5 고객센터와 별도의 합의 없이 2008. 2. 1. 뉴타운 지역을 북부5 고객센터 관할 구역에서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서울도시개발의 서울3직영 고객센터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 [서울도시가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14-105호)]

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

[사실관계]

(1) 설계·시공 일괄공사 설계변경계약시 공사대금 감액행위

피심인(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 11. 19.과 2011. 5. 27.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게 '수도권 고속 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수도권고속철도 적기 준공, 수도권고속철도 횡단구간 및 개천을 내는 사업 시행 물량 변경 등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2013. 4. 25.부터 2014. 12. 26.의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턴키공사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71.96% ~94.25% 수준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 대하여 총 2,770,272천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2)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

피심인은 2013년 초 거래상대방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급증하자, 2013. 4. 8. 이사장 주재로 '공사간접비 소송관련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시공사로부터 '간접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 한다는 확약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설계변경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 방안'을 2013. 4. 26.에 작성하여, 2013. 4. 29.자로 피심인 소속 각 부서 및 지역본부에 시달하였다.

이 같은 '현장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전후하여 피심인은 자신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경부터 2015. 4. 8.까지 쌍용건설 등 68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등을 피심인에게 추가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3) 과태료 전가행위

피심인은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11건의 건설공사를 거래상대방에게 건설위탁 하면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 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0.부터 2014. 2. 5.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총 11건, 19,760 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를 삼성물산 등 11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2010. 7. 8.부터 2014. 4. 3.까지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1) 거래상대방과 철도시설 설계·시공 일괄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거래상대방과 철도시설공사 및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연장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등에 대한 지급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피심인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대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16-22호)]

[사실관계]

(1) 교통유발금의 임차인에 대한 전가행위

피심인(한국공항공사)는 국제 항공노선의 인천국제공항공사로의 이전에 따라 여유시설 부지에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주)신세계 외 5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물을 운영하여 오던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공항시설 소유자인 피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임대차계약서상 이를 임차인과 분담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04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총 422백만원)중 일부분을 임차면적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분담시켰다.

(2) 물품납품검사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피심인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으나, 납품업체들과는 무관한 피심인의 선행공사 '레이더 송신소 신축공사'의 지연에 따른 사업변경을 이유로 2002. 12. 24.에서야 물품검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총 3,570천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예가작성 착오를 이유로 공사비 감액행위

피심인은 2002. 5. 8. 대한로드페인트(주)와 「김포, 김해, 제주공항의 활주로 그루빙 설치공사 계약」 (계약금액: 1,051백만원)을 체결하고, 시공중에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2002. 10. 11. 체결하면서 제주공항의 이스콘 포장공사 노임단가가 당초 설계시 과다계상 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비 3,901천원을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서상 분담규정이 없는 임차인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분담시킴으로써 자기를 위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2)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납품검사를 지연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3) 공사계약 체결 후 예가가격 작성 착오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을 내렸다. [한국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05-044호)]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가 2009.6.10부터 2011.8.19 기간 동안 12개 건설사에게 '김제-부안, 고창-영광, 장성 주배관 건설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현장 여건변경 및 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내부 감사 결과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지적을 받게 되자 증액한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건의 건설공사 위탁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계약보증수수료 및 공사 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행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1,000,000원 부과)[한국가스공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2015-090호)]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건

[사실관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기간은 ‘06.12.13~’12.12.31.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지조성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계약상 토지사용가능 시기도 1년 4개월간 지연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수인들로부터 지연 손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에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시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재산세 또는 미납 잔대금의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연기 등)를 전혀 준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위는 공공 택지개발 시장에서 독과점적 사업자로서 자신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전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공급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제공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과징금 5억6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행위중지 명령 및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건 토지매수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건(의결 제2021-229호)]

사례

거래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 감액

[사실관계]

피심인(한국지역난방공사)은 열수요자의 증가 등 거래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거래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거래상대방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당초 계약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설계변경이 거래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를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계약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함으로써 협의하여 적용될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비를 감액한 것은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5-043호)]

사례

설계변경 시점이 아닌 최초의 계약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은 ① 5개 건설사에게 2008.7.18.부터 2012.7.30. 기간 중 ‘시화인공수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등 7건의 공사를 턴키공사로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게 되자 해당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88~97.7% 수준으로 적용하여 총 705,000천원을 감액하였다. ② 또한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위탁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물량이 증가하게 되자 공사대금을 증액하면서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총 5,900천원을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①의 행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②의 행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증액'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계약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결 제2015-088호)']

사례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판단되어 조치된 사례

[행위사실]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7.3.14일자로 용지규정시행세칙 제73조제2항에 환매특약 등기 및 그 변경·말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한다고 개정하여 해당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에도('97년 750백만 원, '98년 647백만 원)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사에서 사용하는 용지매매계약서 상에는 환매특약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중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수인이 환매특약 설정 및 말소등기 시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한국토지공사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됨(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272백만 원 부과)[한국토지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건 (의결 제99-47호)]

사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시 조정단가 적용하여 감액

[사실관계]

경기도시공사가 2009년 이후 9개 건설사에게 '광고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등 11건의 공사는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로, '광고신도시 생태하천 및 특수구조물 조성공사' 1건은 대안입찰공사로 위탁하였음. 이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게 되자, 해당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93.4%~99.9% 수준으로 조정하여 총 1,223,573천 원을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지방계약법 및 계약서에 경기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공정하지 못하고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법과 계약서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하고자 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됨(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8,000,000원 부과) [경기도시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건 (의결 제 2016-015호)]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Do]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CP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거래조건 설정시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편람의 예시 내용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7.6 경영간섭

해설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 시 자기와 사전협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②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③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간섭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한국전력공사)은 인정품목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기자재의 재질, 기능, 성능, 시험기준, 설계 기준, 사용부품별 규격 및 조달업체 등을 명시한 '제작규격(제작시방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작규격에는 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의 명칭, 규격, 재질, 수량, 조달방법, 조달 업체명 등을 상세히 기재한 '부품공급업체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편람에는 '주요' 부품의 명세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요 부품의 범위를 지정해 놓지도 않고 있어서 실제상으로는 '모든' 부품의 명세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명세서 제출의무 부과 뿐만 아니라 명세서 기재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지침29조) 공급업자는 부품의 규격, 성능, 재질 등이 동일하고 단지 조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심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종합하면, 피심인은 자신의 공급자에게 부품업체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명세서의 기재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첫째, 피심인은 '주요부품명세서 제출제도가 부품의 무단변경사용으로부터 기자재의 성능 및 안전성 과 품질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요부품의 명세 범위를 지정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요부품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구성하는 전체 부품에 대한 조달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급과정에서 규격·재질·구조·성능 등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함에도 그 부품을 조달받은 업체만의 변경 등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과 정도가 지나쳐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

둘째, (주)평일 등 공급업체는 동 제도로 인하여 최초 등록된 부품공급업체보다 더 나은 성능의 부품 또는 최소한 동일한 성능의, 더 저렴한 가격의 부품을 다른 업체로부터 조달받는 것을 제한 받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들은 부품의 조합 또는 부품의 조달방법, 조달업체 등 제조 노하우를 노출시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피심인은 기자재의 안전과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시험 및 시험사용이라는 사전검사와 검수 시험·성능확인 시험·주기인정시험·하자담보증권 제출 등 사후제품관리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 이다. 따라서 (주)평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품공급업체명세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기자재의 품질을 담보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비슷한 기자재를 공급받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기자재부품의 명세를 제출받고는 있지만 주요 부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품조달업체 변경에 따른 승인은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8-386호)]

사례

서울특별시 관리공단의 경영간섭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의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사업소에서는 2000.5.27. 식물원내 농수산물 판매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심인으로부터 판매품목 및 가격심의를 받아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승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에 따라 2001.2.16. 임대매장에 대한 판매품목 및 가격을 승인하면서 피심인의 직영매장 주력상품인 비누, 향수제품과 농수산물 중 피심인의 직영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품목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컴퓨터 레이저 사진 29종과 농수산물 54종, 과자류 12종 등의 판매품목 및 단가를 승인 또는 조정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제주여미지 관광식물원내 농산물 판매점 판매품목 또는 판매가격 승인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제주관광식물원 농수산물 판매점 운영업자는 계약기간(통상 2~3년)동안 매년 연간사용료(임차료)를 피심인에게 선납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판매품목 및 가격 등의 거래내용은 재료비·사용료(임차료)·계약보증금·시설유지비·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운영업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 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제한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임차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둘째, 피심인의 이 건 경영간섭행위는 피심인의 직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력상품인 비누, 향수 제품과 농수산물 제품 중 피심인의 직영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품목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판매품목 및 단가를 승인 또는 조정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직영판매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부당 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점

셋째, 편의시설물 운영업자들의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등의 결정·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명시적인 통제근거가 있는 등 그와 같은 통제가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없는 한, 독립사업자인 편의시설물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 하도록 해야 할 사업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없이 편의시설물 운영업자들의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등의 거래 내용을 제한하였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서울특별시 관리공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2-20호)]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내 매장의 가격 결정에 간섭한 행위

[사실관계]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 관리를 위해 가격 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음료사업자들이 신고·승인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음에도 2015.4.13.부터 4.21.까지 식음료사업자의 전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동일 품목의 판매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거나, 환승호텔 같이 식음료 사업과는 관계없는 상품의 요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식음료 가격을 인하시키는 등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가격을 인하시켰다.



[공정위 판단]

첫째, 식음료사업자에 대해 판매가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품목의 판매 가격을 통일하도록 한 행위의 경우,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점, 인천공항 내 식음료 매장 간 자유로운 가격 및 품질경쟁을 저해하는 점, 해당 품목은 모두 사전에 피심인에게 신고하거나 피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판매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던 상품인 점, 당사자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 계약상 근거가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전에 식음료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피심인 사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불시에 이루어지는 등 거래상대방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등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

둘째, 환승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한식당 음식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행위 의 경우, 환승호텔과 한식당은 단지 운영주체가 동일한 것일 뿐 계약기간, 영업장소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환승호텔 객실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매출증대를 한식당 음식가격의 인하와 연계한 점, 한식당 음식가격을 평균 13.6% 인하하는 안에 대해 피심인은 사업자의 매출 증대분, 적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하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적정이익에 대해 관여한 점, 계약서상 피심인이 식음료사업자가 운영하는 별개 사업부문의 매출 및 이익 증가를 이유로 식음료 판매가 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점, 환승호텔의 객실요금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식음료 판매가격 신고·승인 제도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2016-082호)]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1차와 2차 수탁사 간 계약에 대해 공사가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경영권 침해). 특히 1·2차업체간 납품대금의 결정 문제는 해당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권 침해로 판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Do]

- 견적을 받을 때 공사가 필연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명기(제3차 참석한 회의록)해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의 구현(상생협력, ESG경영추진 등)을 위해 1차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 대해 개입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개입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해 명시적인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8 구속조건부거래

8.1 배타조건부 거래

해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즉 배타적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비록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당해 상품·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범위만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 ①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②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③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 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8.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해설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①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③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례

다쏘시스템코리아(주)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사실관계]

피심인 다쏘시스템코리아(주)는 2016. 10. 1.)부터 2020. 12. 31.까지 SolidWorks 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첫째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는 정책(이하 '영업권 보호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함으로써,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을 제재하였다. 둘째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라이선스 영업 활동을 먼저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영업보호"를 위해 타 대리점의 "중복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OCT(Opportunity Check Tool) 정책을 운영하였다. 셋째 기존 고객이 특정 대리점과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갱신 영업권을 기존 대리점에만 부여하는 내용의 'On-time 정책'을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위 행위는 브랜드내(대리점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 및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시정조치, 서면통지 및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다쏘시스템코리아(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24-233호)]

9 사업활동 방해

해설

사업활동 방해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활동방해는 ①기술의 부당이용 ②인력의 부당유인·채용 ③거래처 이전 방해 ④그밖의 사업활동 방해 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업활동 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여야 함.

예시

- ①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③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 ④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 ⑤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⑥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든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⑦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사례

고려운수의 지입차주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은 SPC GFS와 SPC GFS 양산 물류센터(이하 '양산센터')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SPC GFS가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파리마켓운송 용역 업체에서 탈락함에 따라 파리마켓 운송 계약은 갱신 없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산센터에서 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피심인 소속 총 7인의 지입차주들은 피심인과 지입계약을 유지한 채 2022년 3월경 SPC GFS의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양산창고(SPC) 개별차주 운영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후 파리마켓 식품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5인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지입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관할행정청에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지입차량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식품 운반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위 행위는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요구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식품운반업 등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고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를 명하였다

[고려운수(주)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279호)].

10 부당한 지원행위

10.1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해설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지원을 한 사업자가 지원주체이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이기만 하면 지원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지원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객체는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이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회사, 출자회사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도 포함됨.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를 말하는데, ‘동일인’이란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동일인관련자는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원,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포함됨.

2) 지원행위

지원행위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어떤 거래를 통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지원행위에는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②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행위(속칭 ‘통행세’)가 해당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가격 또는 거래조건과 문제가 된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비교하여야 함.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거래를 할 때, 직거래가 가능하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을 매개로 거래하고, 그 계열사 등은 별다른 역할이 없이 일종의 수수료(‘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부당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됨.

10.2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지원행위(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거래하는 경우)

해설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

계열회사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주는 현저한 규모의 유상증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한국토지주택공사)은 2007. 8. 3 계열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실시한 7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토지신탁의 2대 주주였던 아이스탐에게 콜옵션(Call option)을 아무런 대가없이 부여하여 유상증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지원이 없이는 유상증자를 하기가 어려운 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은, 계열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하였다. [(공정의 의결 제2010-017호)]

2) 자산거래(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한 것은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현대자동차가 2001. 2. 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등 문화창업투자그룹 소속 계열회사 5개사로부터 원고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 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0%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11.52%(14,009,517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 3. 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원)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 행위 이고,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매매 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05두5963)]

사례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임대위탁수수료의 과도한 설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한국토지주택공사)은 1998년 11월부터 2003년 말까지 일반분양주택의 관리업무,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와 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를 일괄하여 주택관리공단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임대수익의 5~6%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였고, 피심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위탁수수료 과다지급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부당 지원행위로 시정조치(2002. 12. 23)를 받고, 2004년부터 위탁수수료 책정방법 등을 변경하여 주택관리공단에게 관리업무와 함께 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다. 피심인은 2004. 1. 1. 부터 2014. 12. 24. 까지 ①관리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전년도 민간위탁 수수료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반면, ②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주택관리공단의 인건비(2004. 1. 1부터 2005. 4. 30까지) 또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05. 5. 1부터 2014. 12. 24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평균 임대주택 247,942호에 대한 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게 위탁하고 11년간 연 평균 24,159백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2004년 대비 2014년 위탁호수가 약 1.3% 증가한 반면에 위탁수수료는 약 45.2% 증가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임대주택의 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임대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위의결 제2015-146호)]

사례

부동산 저가 임대를 통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지원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한국토지주택공사)은 피심인은 1999.4.1~2003. 11월 현재까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소재 대한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건물 일부를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은 서울본부가 조사한 주변시세의 60% 수준인 평당 1,500천원~1,800천원, 관리비는 주변시세의 52%~64% 수준인 평당 11,000원~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부당하게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 의결 제2004-008호)]

*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공정위 의결 제2004-008호)에 대해 “공정위가 이 시간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가 정상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공정위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 밖에 없다”(2007두1446)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만 현재 공정거래법은 “현저성”이 아니라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상품·용역 지원 행위

해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 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또는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단가나 조건 등 대가의 차이는 없으나 거래규모 자체가 정상적 거래와는 다른 ‘상당한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부당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

비자회사와의 경쟁 입찰방식계약에 비해 높은 대가로 발주한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한국지역난방공사)는 비파괴검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회사의 면허취득 보고를 받고 발주를 추진하였고, 자회사가 기술수준이 미흡한 업체임에도 검사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일반경쟁입찰 시 피심인이 적용하는 적격심사 배점기준상 비파괴검사 수행실적 항목이 19%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임에도, 자회사는 수행실적이 없었던점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했다면 수주 가능성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및 1998년도에 각각 비파괴검사 용역 총 계약물량의 63.2% 및 73.7%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자회사에 발주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현저히 높은 대가로 발주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비자회사와의 경쟁 입찰방식계약에 비해 높은 대가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 의결 제99-82호)

사례

외주 시행 책임감리용역 물량 전부를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지원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사실관계]

피심인(한국토지공사)은 2000. 4. 4.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 일부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을 득한 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공동주주인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사전에 수의계약 지원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결정하고, 자신의 외주시행 책임감리용역 물량중에서 75.2%를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배정물량중에서 2000. 7월부터 2001. 1월 기간동안 김해정유1·2공구아파트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7건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율 81.7%에 발주함으로써 경쟁입찰을 통한 비관계회사와의 책임감리용역 계약시 평균낙찰율 73.4%보다 8.3%p 정도 높은 낙찰율로 총 9,849백만원을 발주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부당하게 관계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예정가격의 94.2%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평균낙찰율보다 6.5~12.5% 높은 수준이었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시장상황하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관계회사에 발주하여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쟁없이 쉽게 해당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한국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1-045호)]

사례

계열회사에 물류 업무 대부분을 몰아준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원고 글로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원고 글로비스가 통합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원고 글로비스에게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주었다.

[법원의 판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후 2년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였다.(2007누30903)>

4) 인력지원행위

해설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 보다 적은 때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인력지원을 한 경우에 해당함.

사례

대한주택공사가 자회사 주택관리회사에 관리소장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대한주택공사)는 자신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뉴하우징(이하 ‘뉴하우징’이라 한다)에게 주택관리사업 부분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뉴하우징에게 관리소장 인건비 405,000천원을 지급하고, 뉴하우징은 합계 237,142,127천원을 7일 내지 30일 지연하여 입금한 사실을 인정된 다음, 뉴하우징의 관리소 직원인 다른 일반 주택관리업체의 업무에 더하여 수행하는 분양 및 전세 관리업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원고가 뉴하우징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고, 원고가 뉴하우징이 지급할 위탁수수료의 입금을 유예한 것은 유예기간동안 뉴하우징이 정산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지원행위로서 그 지원 의도 역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지원성 거래규모와 뉴하우징의 2000년도 추정순이익의 21.1%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현저한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약 252개가 존재하는 주택관리업체의 대부분이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지원행위는 뉴하우징의 자금사정을 개선시켜 영세업체들만이 존재하는 관련 주택관리시장에서 뉴하우징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5두2773)]

5) 거래단계 추가(일명 ‘통행세’)

해설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

[사실관계]

한전 및 6개 발전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주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한전 및 6개 발전회사는 IT 관련 단순상품 구매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않는 한전KDN를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중간 유통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전KDN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국전력공사 소속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15-087호)]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자금대여, 자산의 매매, 임대차 및 상품·용역 거래시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를 포함하여 다른 회사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거래의 목적물을 공급자 또는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열회사 등을 거쳐서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른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여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급여는 당사가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Do]

- 계열사 또는 출자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관계없는 회사라면 알아야 할 협상 절차를 반드시 밟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계열사와 거래 목적물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할 때에 지원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도록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Q&A: 불공정거래 행위

Q1 공공기관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도 사적 거래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법원(90다카3659)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전동차의 제작 납품·구매 계약의 주체로서 사업자성을 인정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이나 시립병원등과 같은 영조물이 유상의 공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Q2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거래상 지위는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 공공기관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대기업과 백화점간의 관계에서도 백화점이 입점한 대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이익제공강요에서 “강요”는 명시적으로 공사 혹은 공사의 임직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공정거래법에서 '강요'는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명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이익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 예컨대 이익제공이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4 공공기관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등의 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현장 여건 변경 및 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 내부 감사 결과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지적을 받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증액한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내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하여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의결 2015-090호)에서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Q5 공공기관이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임차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기가 높은 사무실을 임차하려면 인기가 낮아 임대가 잘 되지 않는 사무실을 함께 임차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나요?

질문의 내용은 전형적인 거래강제의 하나인 "끼워팔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끼워팔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다른 상품(별개 상품성), 둘째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강제성), 셋째, 이러한 판매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해야 하는데, 질문의 사례는 이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절 |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일러두기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기관은 경쟁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담합 주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담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가장 위법성이 중한 행위로서 위반 시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구속 등 형사제재가 수반되기 쉽다는 점
-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점
- 담합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법위반이라는 점

1 개 설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는 흔히 담합 또는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여기서는 “담합”으로 약칭)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행위는 “합의”를 의미하므로 실행에 이르지 않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합의는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2 합의의 추정

해설

사업자간의 담합이 자주 적발되는 업종에서는 담합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어 법에서도 일정한 정황이 인정되면 합의가 “추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정황증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합의의 존재, 경쟁제한성 등은 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합의는 정황증거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과 담합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로서는 담합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황증거 예시

-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수요공급조건,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있는 경우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합의 등 9개 유형이 공정거래법에 열거되어 있으나(9호의 경우 내용은 2개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개 유형) 경쟁사업자간에는 사업의 경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담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표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구 분*	내 용
1. 가격합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거래조건합의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생산출고제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지역상대방제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설비제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종류규격제한	상품·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공동수행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사업활동제한 및 정보교환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구분의 명칭은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백서 참조

공공기관은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응찰자들 간에 담합을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사례로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14개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담합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향후 공정위나 검찰의 적극적 법집행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감독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매우 높은 범위반 유형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공공기관에서 주의하여야 할 입찰담합 및 최근 범위반유형으로 신설되어 범위반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용어설명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가격합의, 생산출고제한, 지역상대방제한, 입찰담합 등과 같이 당해 공동행위만 존재하면 그 위법성(경쟁제한효과)은 당연히 인정되는 유형을 “경성카르텔”이라고 부르며, 별도로 위법성을 규제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 유형을 “연성카르텔”이라고 부름

2.1 가격협약(가격담합)

해설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용역의 가격과 관련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가격으로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정하거나 또는 기준가격을 정하는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 사업자는 과당 경쟁금지나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간에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격과 관련된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공기관의 발주 관련 임직원들이 응찰자들의 과당경쟁 방지 등의 명분으로 가격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응찰자들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한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 회의 의사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코리아는 다시 건 별로 수주 형편을 나누어 납품할 물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4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5-057호)]

2.2 거래조건협의

해설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라 함은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에 대한 사업자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거래조건은 사실상 가격의 고저를 평가할 때에 고려요소라는 점에서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AS기간, 내용, 방법등을 제한하거나,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등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기간 결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례

3개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의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합의

[사실관계]

대학(교)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아이엔텍)는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2015. 4. 16. 최초 합의 이후 2022. 5. 19.까지 약 7년여간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모든 거래분야가 합의 대상이었으며,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등 거래와 관련한 최저가격 합의, ②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등의 거래조건합의, ③ 기존 거래처 보호를 위한 영업 금지 및 견적 협조 등과 관련한 거래상대방제한 합의로 구분된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상호 과열 경쟁과 거래처 뺏기를 유발하는 증명발급기 및 팩스증명발급 무상 기증, 기부금 제공 등의 영업 수단을 활용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위 행위사실 중 거래조건협의 부분 발췌)[3개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286호)]

2.3 생산출고제한

해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례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정부무상분 폐회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호텔(서울 중구 ○○로 소재)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최종 합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145,000원의 투찰단가에 낙찰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농협중앙회의 폐회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농협중앙회 폐회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농협중앙회 폐회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3-202호)]

2.4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시장분할담합)

해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거래지역 제한),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거래상대방 제한) 등, 시장을 분할(market allocation)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장은 상품·용역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므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를 시장분할담합이라고 부릅니다.

사례

엘리베이터 교체계약 관련 3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2004년 1월경부터 노후 엘리베이터교체 계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승강기 설치 회사가 교체공사를 수행하도록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하기로 하고,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하였으며, 차이가 나는 엘리베이터 대수는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① 피심인들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발주 물량에 대한 입찰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부분은 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가격담합), ② 피심인들이 국내 교체 엘리베이터 물량에 대하여 기존 설치회사에게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물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된 행위는 각 사의 판매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상품의 생산·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생산출고제한), ③ 교체물량이 나왔을 때 계약을 체결할 자를 결정하여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수주자를 합의로 정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시장분할협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다 [엘리베이터 교체계약 관련 3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8-267호)]

2.5 설비제한

해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생산 및 사업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쟁수단을 제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됩니다.

설비제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장비의 도입자금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6 종류규격제한

해설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기업경쟁 강화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 제품의 다양화와 신제품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 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신제품의 거래 승인 거부, 거래 시기 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7 영업공동수행 등

해설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로서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이와 같은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은 가격이나 물량 그리고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정화조 제조판매회사의 공동판매회사 설립행위

[사실관계]

19개 정화조 제조·판매회사들이 2004년 접합형 정화조가 다시 합법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제조사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5월 29일에 서원에스엠이라는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서원에스엠과 정화조 제조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통해 정화조의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하면서 가격을 합의하고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정화조 제조업체들에게 생산과 출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및 서원에스엠 및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였다.[19개 정화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3-089호)]

2.8 사업방해 또는 제한

해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다른 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례

8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건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2006. 6.경 드림회 모임에서 신고인 대경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의 매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알림장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2006. 6. 21.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심인들의 사업장에 “알림 고객여러분!!! 본 중개업소는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중개업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경부동산과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드림회 일동(관악드림타운 단지내 상가 및 주변부동산 모임)”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 게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신고인 대경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매도 의뢰를 받고 중개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신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동산 중개업계의 상관행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피심인들의 사업장에 ‘신고인이 부동산 중개업계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자리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신고인이 마치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부동산 매매 희망자들로 하여금 신고인과의 거래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거래가 감소되는 등 동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범위만 공표를 명하였다[용부동산 등 8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드림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306호)]

3 입찰담합

3.1 개요

해설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의 하나로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분야입니다.

공정거래법외에도 입찰담합은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규제하고 있고, 입찰 발주 기관에서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 입찰담합의 유형

1) 입찰가격담합

해설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 또는 최고 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범위반입니다.

예시

- ①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②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③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④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①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
- ②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③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④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해설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됩니다.



예시

- ①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낙찰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속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②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③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④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⑤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⑥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①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②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③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낮은 기술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

사례

한국도로공사 발주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사실관계]

피심인인 케이유피피 주식회사,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및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은 2022년 6월과 7월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였고, 이들은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며, 각 사별로 납품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가격과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방식대로 납품 물량을 배분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담합 행위로 판단, 각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한국도로공사 발주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 및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266호)]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해설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됩니다.

예시

- ①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②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③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① 급격한 가격상승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자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②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해설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됩니다.

예시

- ①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임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③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①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공표하는 행위
- ②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사례

철도차량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물량 배분 및 낙찰자 결정 등 입찰담합건

[사실관계]

피심인인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는 2019년에 약 1200량 규모의 철도차량 발주가 예정되자, 각 회사가 입찰을 통해 낙찰받을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로템은 발주물량의 60%를,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각각 20%씩을 수주하기로 하였으며, 고속전철 부문에서는 현대로템이 단독으로 수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입찰에 불참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담합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어졌으며, 새로운 경영진 취임 이후 현대로템이 합의에서 이탈하며 담합행위는 종료되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물량을 배분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철도차량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현대로템에 323억 원, 우진산전에 147억 원, 다원시스에 9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피심인들에게 향후 동일한 방식의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236호)]

5) 경영간섭 등

해설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됩니다.

예시

- ①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②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③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④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①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②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모임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행위
- ③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사례

한국도로공사 발주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사실관계]

피심인인 케이유피피 주식회사,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및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은 2022년 6월과 7월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였고, 이들은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며, 각 사별로 납품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가격과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방식대로 납품 물량을 배분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담합 행위로 판단, 각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한국도로공사 발주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 및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266호)]

사례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 관련 담합건

[사실관계]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매년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회사의 대표들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입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각 회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하였고, 나머지 업체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협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각 업체는 자신이 배정받은 물량을 기반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입찰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및 물량을 사전 합의하여 경쟁 질서를 왜곡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총합 약 4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도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심인들에게 향후 동일한 방식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 레미콘 구매 입찰 관련 17개 레미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0-171호)]

4 정보교환 행위

참고

정보교환행위는 입찰시 또는 경쟁사업자간에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담합의 유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담합의 교사·방조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합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1 개념

해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즉 사업자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경쟁사 정보를 수집해 자사의 경영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이른바 기밀정보 또는 민감정보(가격, 생산량, 비용 등)의 수집 및 교환(이하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담합을 추정케 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어 왔는데 2020년 12.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시 이러한 정보교환행위를 담합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4.2 요건

해설

1) 정보

여기서 “정보”란 좁게는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로써 가격인상계획안, 인상내역, 판촉내용, 영업전략 정보 등이 해당되며, 넓게는 기업의 기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 능력, 거래조건 등을 말합니다.

판례는 ‘정보’의 의미를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시로 라면 회사들의 가격인상 계획 및 인상 내역, 유제품 사업자들의 시유 및 발효유 제품별 가격인상안, 음료회사들의 월별 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신제품의 가격, 영업전략정보, 가격인상안을 들고 있습니다.

2) 교환행위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로는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경영정보수집기관, 대리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3) 경쟁의 실질적 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

11개 제강사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입찰담합건

[사실관계]

피심인 11개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기준가격)의 변동폭과 변동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철스크랩 재고량, 제품 생산계획, 입고량, 철스크랩 적치공간 등 중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수입 철스크랩의 예정일 및 예정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며, 철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강사들은 개별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철스크랩 가격을 조정하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철스크랩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고 담합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심인들에게 총합 4,0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정보교환 금지, 교육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1-016호)]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어느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를 그 기업의 경쟁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사업자간에 담합이 발생할 경우 방조행위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Do]

- 사업자간 모임에 불가피하게 참석한 경우 접촉 경위나 모임의 성격, 대화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5 제재와 자진신고제도

5.1 제재

[표 1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제재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입찰담합의 주도자나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 참가자로 간주)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내에서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범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의무



제재유형	내용
형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는 아니지만, 담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의 하나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경우가 많음 특히 공공기관 발주 건에 대해 입찰참가자 간의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상승한 경우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됨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무과실책임과 손해배상액 예정제도(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법관이 명할 수 있는 제도)의 특칙이 있으며 담합의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5.2 자진신고제도

해설

자진신고제도 또는 리니언시(Leniency)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리니언시는 현재 제도 운영주체에 따라 공정위 리니언시와 형사 리니언시가 있습니다.

[표 14] 리니언시의 유형

구분	공정위 리니언시	형사 리니언시
근거법규	공정거래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150호, 2020.12.10)
대상행위	모든 담합 유형	가격/공급량 제한, 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
신청자격	사업자	사업자, 개인
감면 내용	1순위 고발 및 과징금 면제 2순위 고발 면제 과징금 50% 감경	1순위 기소 면제 2순위 구형량 50% 감경

리니언시외에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범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범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 공공기관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하지 않도록 입찰의 전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및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입찰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 유형이기 때문에 담합의 외형만 갖추더라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담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정위자진신고 감면신청 접수처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카르텔총괄과
- 전자우편 : Leniency@korea.kr
- 팩스 : 044-200-4444
- 문의처 : 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35

Q&A: 부당공동행위

Q1 업체 관계자들끼리 식사자리에서 가끔 가격 정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인지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암묵적 동의도 포함됩니다.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추정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야기를 나눈 당사자들의 직급 및 관련 업무, 모임의 시기 등이 가격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Q2 합리적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 가격을 합의하여 제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때 제품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서 사업자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인지를 불문하고 경쟁제한적인 합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관련된 합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소위 경성카르텔에 해당합니다.

Q3 관련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다만 실무에서는 공정위가 인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실제로 인가를 받은 사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3절 | 불공정 계약 행위(약관법)

일러두기

공공기관의 경우 수탁사,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계약조항은 대부분 미리 마련해 둔 표준 양식에 의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합니다. 실제 공정위 적용사례도 많은 법규이고 계속 개선해 왔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조항도 현재 시점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공정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약 체결시에는 불공정 계약조항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법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약관법 개요

1.1 약관의 개념 및 규제 이유

해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실무상 “약관”이란 명칭이 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명칭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 둔 계약내용이 있으면 약관법상의 약관 개념에 해당됩니다.

약관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작성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고, 특히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가 각종 보험, 여객 및 화물 운송, 전기 및 전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1.2 약관법의 규제 체계

해설

약관법은 불공정약관이 작성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편입단계에서 통제하고, 편입이 되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된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 불공정성을 제거합니다.

한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분쟁에서는 법원이 해당 약관을 심사하여 무효로 선언하게 되고 공정위에서는 구체적 분쟁과 관련없이 약관의 내용만 심사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약관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또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표 15] 불공정약관에 대한 통제 유형

통제유형	내용	관련 규정
편입통제	불공정 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경우 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명시설명의무 및 개별 약정 우선 원칙 (법 제3조 및 제4조)
해석통제	약관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함	약관의 해석(법 제5조)
불공정성 통제	해석에 의해 불공정성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일반원칙(법 제6조) 및 개별기준(법 제7조~제14조)

불공정성 통제는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무효와 개별기준(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목록)에 의한 무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중첩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공정위에서는 개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면 개별기준을,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불공정성을 심사합니다.

2 약관의 편입통제

2.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해설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명시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교부를 통해 명시될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 예컨대 배상책임 등과 같은 규정은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약관의 사본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법 제3조 제3항). 즉,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임에도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2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해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

3 약관해석의 원칙(해석통제)

해설

약관법에서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2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원칙적으로 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별약정은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공공기관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Don't]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체결시에 설명을 하거나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관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하거나 유리할 경우 그 근거를 반드시 검토하여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어 적용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해석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따라 우선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4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 심사 기준

4.1 일반원칙(제6조)

법 규정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의미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2항 1호)

- ①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②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선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③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
- ④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⑤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⑥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⑦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사업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집단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⑧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패소 여부나 패소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예시

(2항 2호)

- ① 입원환자가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미리 수납한 진료비(1개월분)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 ②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임대계약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말기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시키고 그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
- ③ 상품의 매수인은 일정기간 무상으로 수리 기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 ④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⑤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 보증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도달 후 일정기간(예 : 4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

예시

(2항 3호)

- ① 강습을 받을 권리가 강습계약의 본질적인 권리임에도 그것을 교재제공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② 상가분양계약에서 상품 교환, 환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는 상가 입주자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판매·관리 일체를 사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조항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상 설치비용의 고객 전가 조항

[약관조항]

전기공급약관 제88조(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부담) : 법령에 전선로의 설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공전선로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중전선로의 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자가 그 차액을 부담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 부담) : 전기간선시설을 가공으로 설치함이 타당함에도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중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추가공사비(지중설치시와 가공설치시의 차액)는 요청자가 부담

[공정위 판단]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의 설치방법을 임의로 결정하여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지중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전도 지중설치비용과 가공설치비용의 차액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지중설치비용과 가공설치비용의 차액을 전액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됨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2001-078호)]



사례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분양계약서(공공분양주택)상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조항]

<공유대지사용제한조항>

특약조항

제2조 1층 세대가 공유대지 일부를 전용정원으로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현행 약관조항은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 전용정원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입주인 전체의 공유대지인 1층 정원에 대하여 1층 입주민에게만 전용 으로 대지권을 인정하고 다른 입주세대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1층 외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대한주택공사의 주택분양계약서(공공분양주택)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05-093호)]

4.2 면책조항의 금지(제7조)

법 규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예시

(1호)

- ①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 또는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과실, 시설물의 설치·보존의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체육시설의 이용 중 손실, 부상, 사고 및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②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점 후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③ 주차장 사업자가 차량이나 차량내 물건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도난, 파손, 분실, 화재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④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가 허위 또는 부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
- ⑤ 요양원 운영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로 요양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입원기간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예시

(2호)

- 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이나 카드 도난에 있어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만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② 점포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건물수리, 개축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편이나 영업상 지장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④ 차량 임대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운행관리자로서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쌍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업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생긴 위험은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차량 임대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는 조항

예시

(3호)

- ①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건축물 및 대지의 공급면적이 당초의 계약면적과 달리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으로 민법상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등기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 ②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매수인이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③ 주택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임차인이 주택 및 그 내부 일체의 보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④ 매도인의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

사례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계약서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

[약관 내용]

을은 매매농지에 대한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면적부족, 내용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정위 판단]

위 약관조항은 면적 부족 또는 내용 불일치 등에 있어 목적 용지의 변경 사유 및 그 정도를 명백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매도인의 법률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농지매매에 따른 피수인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어 매수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제3호에 해당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정됨[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계약서 등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99-54호)]

사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조항

[약관조항]

<공급면적 증감조항>

제3조제2항(소유권 이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에 표시된 분양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정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2. 대지공유지분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범위이내인 경우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상하 100분의 2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 나.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등의 준공 또는 처분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 다. 나.목의 사업지구안의 상업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면적 증감 또는 주택관리 단위별 면적 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 라. 지적법에 의하여 신규등록, 등록전환 또는 면적오류정정 등의 지적정리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 마. 동일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승인년도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증감이 되는 경우
 - 바. 기타 "갑"의 귀책사유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목의 사업지구 경계변경없이 발생하는 면적 증감의 경우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사업지구의 지복이 입야에서 대지로 등록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면적증감이 지적법 상의 허용오차범위 내이고 또 그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사업자에게 정산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현행 약관조항은 일정한 사항을 열거한 후 그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정산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분양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94-443호)]

사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약관조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점포명도 기일까지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반납(명도)하며, 이에 대한 제소전 화해를 실시하여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화해비용은 "을"(본 각서인)의 부담으로 하고 또한 점포내부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의 금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일체의 금원 및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민사소송법」 제389조에서는 제소전 화해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46조에서는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의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유익비·필요비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652조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08-071호)]

[약관조항]

1.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금지 조항

제7조(임대보증금) ⑤을은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공정위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2.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 배제조항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갑은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목적물을 명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공정위 판단]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3. 유익비상환 및 부속물매수 청구권 제한 조항

제9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②제1항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은 모두 “을”의 고유한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환 또는 부속물 매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4.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제17조(안전 및 화재예방) ⑧을은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②을은 시설물 설치, 영업장 관리, 안전관리, 소방관리, 기타 제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공정위 판단]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

5. 보험 가입 강제 조항

제10조(보험의 가입) ①을은 임차한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위 판단]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

6.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제28조 및 제24조(관할 법원) 본 계약서에 기재한 재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 또는 지사 소재지 관할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

[한국공항공사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2005-013호)]

4.3 손해배상액의 예정(제8조)

법 규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예시

- 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②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에도 임대보증금의 10%를 임차인의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⑤ 상조서비스 계약에서 회원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차별 납입금의 위약 공제율 (공제금액÷상품금액 × 100)이 20%를 초과하여 회원모집 비용을 일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관행(거래대금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조항

사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 불가조항

[약관조항]

피심인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호텔 등을 검색하는 경우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상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

숙박예약자가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선결제한 숙박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일단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 등의 고려 없이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의 재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의 취소시기, 숙박예정 일로부터 남은 기간, 취소객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 2019-032호)]

사례

임대차계약서상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약관조항]

용산관광버스터미날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조항 중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입점지체 및 위약금) (2) "을"은 제(1)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없으며 이때에 "갑"은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의 금액과 기타 임대료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 제29조(임대보증금 반환)에 의거 나머지를 반환 한다는 입점지체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조항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에 대한 대가는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산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이라 할 것이고,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 10% 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적정수준이라 할 것임에도 동 약관 조항은 임대료총액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판단. [용산관광버스터미날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1997-266호)]

4.4 계약의 해제·해지(제9조)

법 규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목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예시

(1호)

- ①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②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③ 아파트 새시설치계약에서 사업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고객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의 이행착수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을 계약일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 ④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할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경우에는 1개월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제636조)함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



예시 (2호)

- ①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의 분양계약에서 고객이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사업자가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②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③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예시 (3호)

- 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나 계약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반환할 경우 그 가액산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항
- ② 상가분양계약에서 계약 해제시 고객이 이미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③ 스포츠클럽 회원가입계약에서 납입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④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⑤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예시 (4호)

-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②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③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 ④ 회원 자격 탈퇴의 통지를 1개월 이전에 하도록 요구하면서 탈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시기(원상회복의무의 이행기)를 늦추는 조항

예시 (5호)

- ①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지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구독자의 중지요청이 없으면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② 주채무의 연장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새로이 연장된 주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주채무의 이행기한의 연장에 따라 연대보증기간도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자동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
- ③ 콘도회원약관에서 콘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의 공사기간 및 투자비회수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예 : 20년)로 하여 보증금을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공급선수협약서 및 상업용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약관조항]

<택지공급협약서>

제11조(협약의 해제) 4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에서 제3항에 의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상업용지공급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2갑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불입한 분양가격, 연체료의 납부금에서 위약금, 원상복구비 등 체납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반환한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548조의 내용일 뿐 아니라 계약해제 시의 기본 법리라고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공급선수협약서 및 상업용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1997-138호)]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약관조항]

<임대계약서>

제11조[임대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계약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사업에 필요한 때
3. "갑"이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때

<이행각서>

만약 계약조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귀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귀 철도 공사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기에 이를 공증하여 각서합니다. 본 이행각서는 임대계약 갱신시에도 유효합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계약의 해지·해제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임대계약서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약관 조항은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 또는 해지 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9조 제3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익제기 및 보상요구 금지 관련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이를 수인하거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바, 이 이행각서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11-042호)]

4.5 채무의 이행(제10조)

법 규정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예시

(1호)

- ①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의대로 물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②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 쌍방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민법제628조)임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만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③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제한사유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자유재량을 인정하여 일방적인 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
- ④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우려가 있는 조항
- ⑤ 상가의 용도, 구조, 위치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⑥ 카드사와 포인트가맹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⑦ 여행사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항공 및 현지사정'과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여행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⑧ 게임이용자의 동의없이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게임서비스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예시

(2호)

- ①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자신의 급부를 중지하여서는 안될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전기 등의 공급을 중단하고 점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② 수강료를 받은 사업자는 약정된 교습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하게 교습할 채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수강자가 교습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실제로 받은 교습시간과는 관계없이 교습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③ 운송인이 고객에게 사전 통고 없이 자신을 다른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약관 내용]

여행사 핸드북의 'SECTION 2' 중 'Resolution 812'의 9.2.1.(a) 조항
9.2.1 이 섹션 9 조항에 따라,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a)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정위 판단]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여행사들이 제공한 역무의 대가로서 피심인의 회원인 항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주된 급부에 해당한다. 주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또는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르면, 외부의 경제적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수수료 등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여행사들은 기존의 급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010년 이전까지는 항공사들이 BSP 시스템 이용 정산 시 항공권 발권수수료로 일정 비율을 여행사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2010년경 피심인이 항공권 발권 수수료를 자율화한 이후 항공사들은 이 사건 약관조항을 근거로 항공권 발권 수수료 등을 여행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피심인의 회원인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된다.[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 2022-206호)]

사례

(주)성창에프엔디의 상가임대분양계약 관련 대법원 판결

[약관 내용]

분양사업자는 상가활성화 정도에 따라 상가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약관조항의 '상가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라는 것은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인상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상가활성화 정도에 따라 ...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위 약관조항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임대료라는 것은 상가건물 내 개별점포의 사용대가이므로 반드시 전체 상가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모든 점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상가활성화를 빌미로 사업자인 임대인이 고객인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사례 인천국제공항의 영업보증금 및 영업료의 차임 감액청구권 배제조항

[약관조항]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20조(계약의 일부 변경) ①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기타 공항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장, 영업시설물 및 주변환경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경, 물가 등 경제적 여건 및 여객수요의 변동 등 계약체결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영업보증금과 사용료 등에 대한 감액 및 영업요율에 대한 인하를 요청할 수 없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상업시설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영업장 면적, 취급업종, 종목(물품 및 서비스)의 변경 및 삭제, 적용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 피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될 계약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은 무조건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기타 공항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피심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인천국제공항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05- 012호)]

4.6 고객의 권익보호(제11조)

법 규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예시 (1호)

- ①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상당기간이 지난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
- ②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개발비는 분양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비 사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③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익을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④ 동산, 건물, 대지에 대한 차임은 매월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임대보증금과 함께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하는 조항
- ⑤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의 설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⑥ 변제의 제공이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규정은 변제자에게 우선적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만이 변제충당지정권을 갖고 변제자인 고객의 변제충당지정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조항

예시

(2호)

- 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②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함에도 여신거래분약관에서 '은행과의 모든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한 때',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의 존속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대금 분할납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예시

(3호)

- ①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어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비용을 부담하는 고객이 결정할 사항임에도 사업자가 지정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
-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고객이 직접 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제3자를 통해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사업자가 지정하는 수임자를 통해서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는 조항
- ③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유통을 할 수 있음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 ④ 골프장 등 체육시설 회원가입계약에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예시

(4호)

- ① 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이 규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 활용시 그 사용목적, 제공범위 등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동의가 있는 등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사나 은행이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회원가입신청서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조항(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회원가입 자체가 거절됨)

사례

대한석탄공사의 차용금약정서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약관 조항

[약관 내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일 전일지라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지점 폐쇄 시)를 상환한다.

- 귀사(대한석탄공사)가 채권을 침해당할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공정위 판단]

기한이익 상실제도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익을 허용하여서는 이행기에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변제일 도래 전이라도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는 계약의 존속이 어려울 정도의 채무자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 등이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임 위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채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2호에 해당 [대한석탄공사의 연탄공장시설 개선 및 공해방지시설 용자 차용금약정서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99-52호)]

사례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약관조항]

<이행각서>

만약 계약조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귀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귀 철도공사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기에 이를 공증하여 각서한. 본 이행각서는 임대계약 갱신 시에도 유효하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 금지 관련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 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이를 수인하거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바, 이 이행각서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11-042호)>

사례

인천국제공항의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조항

[약관조항]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4조(영업보증금) 3공사는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종료되면 그 종료일(원상회복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영업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에도(민법 제536조), 현행 약관조항은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였다.<인천국제공항의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조항에 대한 건(시정 권고 제 2005-012호)>

4.7 의사표시의 의제(제12조)

법 규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예시

(1호)

- ① 가스공급에 사용할 시설의 매매·임대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전 가스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
- ② 연대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증인 또는 카드회원의 탈퇴 최고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 ③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④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⑤ 카드사의 카드발급기준에 의거 해당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의 신청서를 다른 카드의 발급 신청서로 갈음한다는 조항

예시

(2호)

고객이 진료예약을 취소·변경하고자 할 경우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거나 예약 당일에도 취소·변경하더라도 병원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약 전일 특정시간까지 내원하여 취소·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항

예시

(3호)

- ①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락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보통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다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지를 의사표시의 수령 장소로 의제하는 조항
- ③ 카드회사가 회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변경할 때에는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회원규약 변경시 카드회사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④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각종 통지가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례

인천국제공항의 발송주의를 채택하는 조항에 대한 건

[약관조항]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5조(통지) 2통지에 대한 효력은 공사의 문서접수부서에 유효하게 접수되었을 때 발생하며, 공사의 계약자에 대한 통지사항은 영업장내 계약자의 종업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약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하거나 FAX로 계약자에 발송한 후 수신을 확인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민법 제111조)임에도, 우편발송 후 3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의 발송주의를 채택하는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05-012호)]

4.8 대리인의 책임가중(제13조)

법 규정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예시

- ①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②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 책임을 진다는 조항

사례

(재)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상 국내대리점 책임조항

[약관조항]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에프(F)항>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정한 규격과 차이가 있는 규격상이품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점은 송장금액 및 해당 부대비용을 변제한 후 규격상이품을 반송하거나 또는 규격상이품에 대한 클레임을 보상하여야 한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외국수출업자)의 대리인(국내대리점)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3조에 해당되어 불공정한 약관으로 공정위는 판단하였다. [(재)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97-040호)]

4.9 소송 제기의 금지 등(제14조)

법 규정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예시

- ① 계약당사자간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②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아파트의 구조 및 위치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의 일반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③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예 : ○○지방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사례

인천국제공항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대한 건

[약관조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계약당사자들이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분쟁의 해결) ③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 의한 민사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6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일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한 소제기 기한을 도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이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공항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사업자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인천국제공항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05-012호)]

사례

[약관조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계약당사자들이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분쟁의 해결) ③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 의한 민사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6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일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한 소제기 기한을 도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이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공항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사업자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인천국제공항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05-012호)]

5 약관의 규제

5.1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

해설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개시한 후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약관의 수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권자: 당해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

시정요청: 만약 불공정 약관조항이 행정관청이 작성하거나 인가한 약관일 경우에는 공정위는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대상

-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2 표준약관의 심사 및 보급

[표 16] 표준약관제도

표준약관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
표준약관의 심사청구 또는 제·개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약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권고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떤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및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공정위는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 공정위는 2000년 2월부터 「표준약관 표지(마크)제」를 시행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과 충돌하는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해 약관이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이 공정성의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3 분쟁조정제도

해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한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성립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분쟁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되고 성립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4 과태료 및 벌금

[표 17]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참고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Q&A: 약관법

Q1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자와 특정한 거래를 하게 되어 별도로 계약조항을 미리 준비한 후 그 사업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약관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법 제2조 제1호).

특정한 거래를 위해 별도로 작성한 계약조항이라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한 거래를 위해 작성한 계약조항이라도 향후 이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는 경우라면 약관으로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오직 1건의 거래에만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계약조항이라면 약관이 아니지만 장래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공공기관이 임대한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사무실을 명도한 경우 공사가 내부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상 2주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약관법에 위배될까요?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보고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제1호(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Q3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조항도 당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관청이 인가한 약관인 경우에 공사가 그 약관조항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으로 보기 어렵고, 관청 인가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특약으로 부가되어 있는 것처럼 엄격하게 법률의 규정을 약관에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거래에 필요해서 삽입한 특약조항이 약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즉 개별약정으로 판단된다면) 약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Q4 공공기관은 많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일이 원고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응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관할법원을 공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특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특약조항은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는데 비록 특약 또는 특수조건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다수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약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관법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제1호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절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관리책임(하도급법)

일러두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법으로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발주자로서 직접 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 또는 의무 사항이 공공기관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하도급법이 위탁 거래에 있어 “갑질”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하도급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부서 및 발주 부서에서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거래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이어지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목적물의 납기 및 품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발주자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주자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거래상대방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계약조건의 설정 및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도급법의 개요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해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법 제1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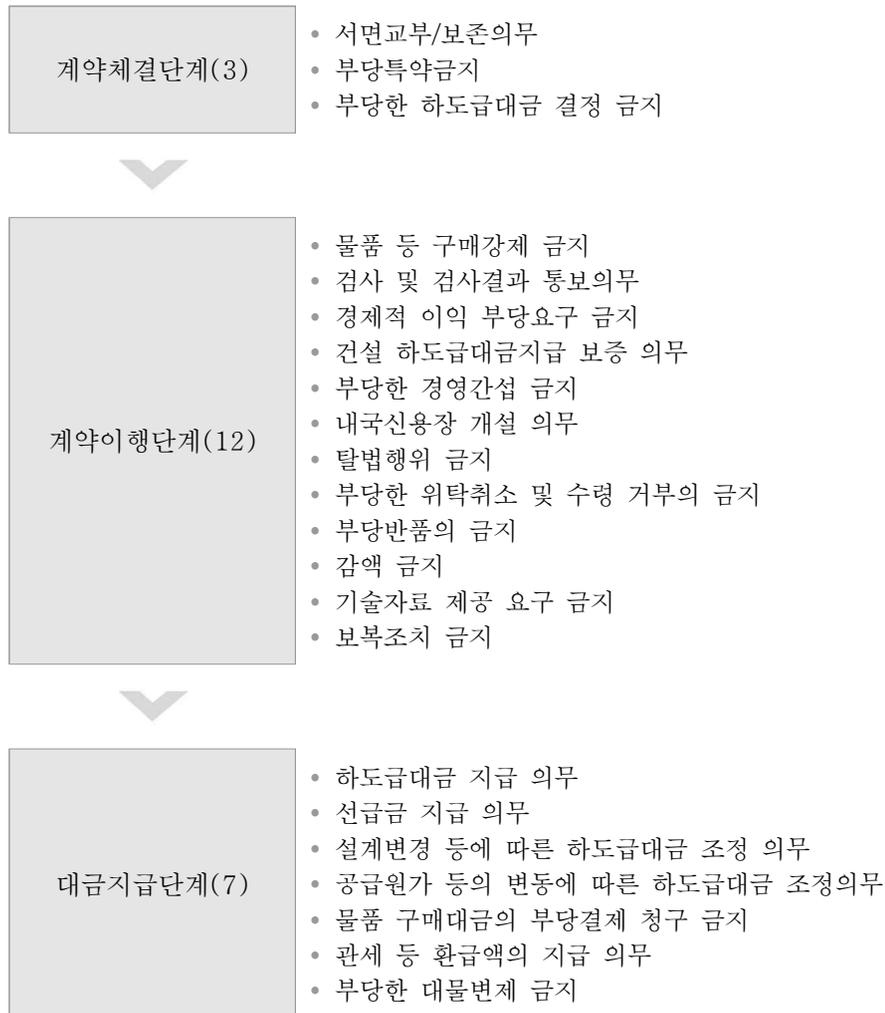
이 법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 하도급법의 구조

[표 18] 하도급법의 구조

<p>목적 및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p>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10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제3조) • 선급금 지급의무(제6조) • 내국신용장개설의무(제7조)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제9조)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제13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제13조의2)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제13조의3)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제15조)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제16조)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16조의2)
<p>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특약 설정금지(제3조의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제4조)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5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8조) • 부당반품 금지(제10조) • 감액금지(제11조)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금지(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2)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제12조의3) •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제17조) •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제18조) • 보복조치 금지(제19조) • 탈법행위 금지(제20조)
<p>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1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제14조)
<p>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3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보존의무(제3조 제12항)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제21조 제1항)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제21조 제2항)

원사업자의 준수 및 금지사항을 하도급 거래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한 하도급 대금의 조정 (즉 변경계약 의무)이지만 편의상 대금지급단계에서 설명합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제13조의3)는 거래단계와 관계 없이 일정한 원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이지만 계약이행단계에 포함시켜 설명합니다.

1.3 적용 범위

해설

1) 법적용 대상 사업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발주자)

[표 1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요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 • 소규모중견기업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규정만 적용)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자로서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대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에서 검색 가능

2) 법적용 대상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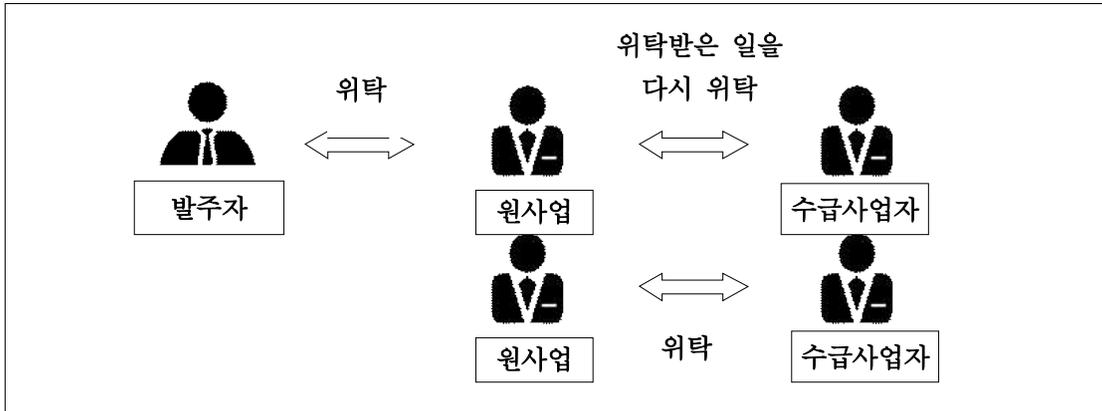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업(業)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고려합니다(관련 법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 형태]



[표 20] 하도급거래 유형

거래유형	내용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및 건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참고로 다음은 건설위탁이 아님 - 무면허 건설업자와의 거래(경미한공사는제외) - 전기공사업면허사업자가 해당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등)
용역위탁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4 위반시 제재

해설

1) 개요

[표 21] 제재 유형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등)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부과: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법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위반 3회이상&벌점 4점 초과)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	--

행정질서벌	과태료부과: 2억원이하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조사거부: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서면실태 조사: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 경영간섭 - 탈법행위 3억원이하의벌금 - 보복조치 원칙적 고발(법위반 3회 이상&벌점 4점 초과) 양벌규정:행위자및법인처벌
민사적 제재	손해배상책임 3배 손해배상 책임 -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보복조치 금지 5배 손해배상 책임 - 기술자료유용금지

2) 벌점제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상습 범위반자 명단 공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마련한 「벌점의 부과기준(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와 벌점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2] 시정조치유형별 벌점

경고 (서면 실태조사)	경고 (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나 범위반 자진시정 향후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표 23] 별점 감경기준

유형	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점(사용 비율 90%이상) 1점(사용 비율 70%이상 90%미만)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또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1점(직접지급 비율이 50% 이상) 0.5점(직접지급 비율이 50% 미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3점
현금 결제비율	1점(현금결제비율 100%) 0.5점(현금 80% 이상 100% 미만)
입찰정보 공개비율	1점(80%이상) 0.5점(80%미만)
협약평가결과(동반성장협약기준)	3점(최우수), 2점(우수), 1점(양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등급평가	2점(최우수), 1점(우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공정위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해당 사건 별점 중 25% 초과 50% 이하 (피해구제비율이 100%) 해당 사건 별점 중 25% 이하 (피해구제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

* 별점 경감시 각 항목마다 1회만 경감함

* 별점 누산점수 산정: 직전 3년간(별점 부과점수 별점 경감점수)

* 직전 3년: 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 직권조사는 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날,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는 공표일 속하는 연도 1월 1일 기준 역산

3)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과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4) 동의를결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은 해당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위에 동의를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결제도는 2022년.1.11 하도급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동의를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준용됩니다. 동의를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2.1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의 인정 이유

해설

하도급계약은 도급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등 참조).

2.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의 행사

해설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이 경우 합의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는데 발주자가 이러한 직접지급 합의를 제출받고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받은 날에 3자간의 직접지급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③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

해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발주자가 부담하는 직접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이 소멸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우열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가 도급대금채권에 압류를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 6476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사례

김해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김해시 기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도급하면서 원사업자 및 신고인(수급사업자)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직불합의"라고 함)하였고, 신고인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8회(하도급 5회) 기성에서 자신의 위탁업무부분에 대한 시공을 마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사업자는 직불합의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8회(하도급 5회) 전체 기성에서 신고인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분리하여 청구한 후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받은 바, 피심인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8회(하도급 5회) 기성과 관련한 신고인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150,705천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발주자로서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김해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24-078호)]

사례

대전지방기상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0.5.20. 태성종합건설과 '기상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태성종합건설은 같은 해 7.18. 제일산업설비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태성종합건설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2010.10.28. 피심인, 태성종합건설, 제일산업설비는 하도급대금을 피심인이 직접 제일산업설비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제일산업설비가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대전지방기상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11-133호)]

3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3.1 서면교부의무

해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시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통지로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2 서류보존의무

해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거래의 중요 사항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 거래가 끝난 후 3년간(기술자료요구서 및 기술자료 요구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의 경우에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표 24] 보존대상 하도급거래 관련 자료

	보존대상	근거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법 3조 1항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법 3조 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법 8조 2항
4	검사결과 통지서	법 9조 2항
5	감액 서면	법 11조 3항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법 12조의3 2항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법 16조 2항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령 6조 1항 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	령 6조 1항 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령 6조 1항 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령 6조 1항 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령 6조 1항 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령 6조 1항 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령 6조 1항 8호

사례

(주)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심인은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반행위를 하였음

- 금형 제조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납품 장소, 대금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단가 조정 조건 및 절차 등의 필수 정보가 누락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 목적물 검사 결과 및 완료일이 명시된 서류를 법적으로 규정된 3년간 보관하지 않은 행위.
- 피심인의 사유로 발생한 금형 수정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계약서 발급 지연 및 불완전한 계약, 기록 보존 의무 위반, 불공정한 계약 조건 설정(부당특약), 납품 확인서 미발급,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주)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282호)]

3.3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해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특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예시

- ① 계약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②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예: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
- ③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⑤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발생한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⑥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전가
- ⑦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⑧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Don't]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4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해설

공공 분야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결과와 계약 내역이 공개되어 왔으나, 하도급 단계에서는 계약 내역만 공개되고 입찰 과정은 비공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월 11일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제도가 신설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의무는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입찰 결과에 적용되며 특히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만 한정됩니다. 입찰가격, 낙찰금액 및 낙찰자 정보(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포함), 유찰 사유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입찰결과는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가 계약을 위한 유찰, 재입찰, 대금 감액 등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해설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증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례

지급보증을 지연한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 (주)대우건설은 2018. 7. 9.부터 2020. 12. 1.까지 기간 동안 ◇◇◇◇ 등 30개 수급사업자와 누수 하자보수 공사 등 총 193건의 건설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17,568,744천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수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판단하였다[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212호)]

3.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해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의 산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도록 함

[Don't]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
-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 (법 제4조 제2항 제2호)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 (법 제4조 제2항 제3호)
-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 (법 제4조 제2항 제4호). 예컨대, 수급사업자에게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
- 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법 제4조 제2항 제5호)
-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적용
-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례

다른 부문의 단가 인상을 약속하고 단가 인하한 후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리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들이 25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함



[법원의 판단]

기아자동차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내부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하된 납품 대금을 전액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14296판결)

사례

일률적 단가 인하 사례

[사실관계]

포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며, 2011년 1월경에도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요청을 받아,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공정위 판단]

위 행위는 포스텍과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및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였다[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의결 제2014-274호)].

사례

예가 초과를 이유로 최저입찰가를 재협상한 사례

[사실관계]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등 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예가내 최저 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 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공정위 판단]

현대엔지니어링의 하도급 관리 규정에 “입찰실시 전에 예가를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견과 관련하여 예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08호-233호)]

사례

금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실관계]

피심인 금강종합건설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즉 입찰 후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당초 입찰가보다 490백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이 추가 협상을 통한 대금 인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를 명하였다.

[금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4-264호)]

4 하도급거래 이행단계에서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4.1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해설

원사업자가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4.2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

해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개설 한도 부족 등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4.3 부당한 위탁(발주) 취소 금지

해설

부당한 위탁취소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에 해당합니다.

사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에 대한 고발조치

[사실관계]

진성이엔지는 2012. 1월부터 2013. 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i)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ii)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iii)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 원을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중소기업청장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00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성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였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여 고발조치 하였다.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결정 제2015-029호)]

4.4 부당한 수령 거부 금지

해설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5 납품시 수령증명서 발급 의무

해설

- 수령증명서는 하도급거래에서 보존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6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

해설

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합니다.
검사결과의 통지 의무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i)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ii)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의무위반 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됩니다.
검사비용문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도록 합니다.
-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Don't]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사례

검사결과 미통지 후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사례

[사실관계]

엔에스인터내셔널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인 엔에스인터내셔널이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고,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 또한, 목적물 수령 후 물품 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5-303호)]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

- 발주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Don't]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4.7 부당반품 금지

해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vs 부당한 수령거부 vs 부당반품 :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①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②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 변경·모델 단종·판매 부진·재고 증가·보관 장소 부족·소비 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팔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 ⑤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4.8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해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은 그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예시

- ①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
-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발주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으로 하거나 또는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A사는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

- ⑤ 원사업자가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강제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거나 자재가격 적용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거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를 이유로 한 감액 :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 ⑧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전가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한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의 동의하에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검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한 후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합니다.

4.9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해설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 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4.10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해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 (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고 수입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 남양건설(주)는 3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수급사업자가 분양받게 하거나(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 또는 (주)남영모터스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렉서스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공정위 판단]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남양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8-147호)]

4.11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해설

기술자료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원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금지
기술자료 유용 금지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손해배상 책임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사례 금형제작 상세 도면 요구 사례

[사실관계]

(주)엘지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공정위 판단]

(주)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다.

[(주)엘지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4-228호)]

4.12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해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상 정보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예시

- ①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②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③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

사례

(주)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경영간섭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 처우, 배당물,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0. 8. 1.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영한 '협력사 KPI 평가지침'을 제정한 이후로 매년 협력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토대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혹은 페널티(계약해지, 물량축소 등) 부과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협력사들은 피심인 퇴사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심인은 협력사 임원 인사에도 개입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상법상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에 대해 '경영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섭할 이유가 없으며 협력사간 거래 목적 달성과는 관계 없이 피심인의 인사적체 해소 등 자신 또는 자기 직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협력사 입장에서는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피심인이 설정한 경영관리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행위중지, 시정조치받은 사실을 이 사건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주)포스코케미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22-268호)]

사례

재하도급거래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 웅진코웨이(주)는 대유전자(주) 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거래 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 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됨[웅진코웨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09-032호)]

정당한 사유

- ①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
- ②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
- ③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 ④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 ⑤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
-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
- ⑧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
-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

5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에서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5.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해설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표 25] 목적물 수령일

제조·수리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인수일로 봅니다.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 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 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Don't]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해서는 안됩니다.(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

[Do]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민원보상비와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사실관계]

A는 C공사 중 일부를 B에게 건설위탁하였고 B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공사도중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근거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비가 들었고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위 보상비와 지체상금 등을 합한 액수가 하도급대금을 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5.2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 의무

해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선급금 지급 의무

해설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사례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사례

[사실관계]

은과건설은 2014. 4. 3. 수급사업자와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중 토목, 건축공사'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가 선급금 미지급(법정기일 초과),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판단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급명령 및 과징금 119,000,000원을 부과 [은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2 - 289호)]

5.4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해설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세 등의 환급이 하도급 대금 지급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해설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해설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 및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5.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해설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6 기타 의무 및 금지행위

6.1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해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6.2 보복조치 금지

해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예시

- ①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동종업계 다른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위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6.3 탈법행위 금지

해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시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②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③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Q&A: 하도급법

Q1 공공기관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나요?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건설업, 제조업(수리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또한 지식, 정보성파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대상인 "원사업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외에 발주자도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공기관이 원사업자의 지위는 갖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원사업자가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원사업자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는 거래상대방이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다만 경영간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Q2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은 하도급법상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직접지급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직접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CP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하도급법상 제품 불량으로 인한 대금 감액행위는 허용되나요?

하도급법에서는 제조위탁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할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 제품 불량이 발견되었고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반품처리할 수 있습니다(반품으로 인한 대금 감액). 다만 검사결과를 통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하자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반품 또는 피해보상(당해 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문제가 발생하지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하자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Q4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생산역량을 도와주기 위하여 납품을 위해 투입한 원가 정보나 수급사업자의 제품개발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가요?

수급사업자의 원가 정보,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은 경영정보로서 이러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당한 경영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도와주고 싶다면 미리 컨설팅의 목적, 기간,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고 원사업자의 요청에 마지 못해 응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5절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일러두기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표시광고법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별도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아닙니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시 표시·광고행위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실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설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는 달리 표시·광고는 “거래행위”가 아니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주의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1 표시광고법 개요

1.1 목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상품·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2 규제이유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 등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거짓·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고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용어 정의

표시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의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함

광고 :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함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요건 및 유형

2.1 요건

- 표시·광고행위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표시·광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소비자오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두6965).
-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유형(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내용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1호)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2호)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3호)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 등이 다른 사업 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사례

아파트 마루바닥 마감재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경기도시공사)은 2006.11.16.부터 2007.2.28.까지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엔 아파트에 대하여 카탈로그와 전단지 등 통하여 아파트 마루바닥 마감재를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합판마루에 속하는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으로 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성이 있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바닥 마감재로 원목소재를 사용하여 시공될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분양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마감재 재질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경기도시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결(약)제2009-256호)]

사례

아파트 분양광고시 세제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인 것으로 광고한 행위

[사실관계]

피심인(한국토지주택공사)은 2009년 6.19. 파이낸셜신문, 중부일보, 자신의 홈페이지, 2009.7.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부곡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가 정부 정책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으로 표시·광고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관련 아파트는 군포시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피심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고 확인 후에도 이를 치유하지 못한 점이 명백하여 허위·과장성이 있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신할 것이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고 또한 실질적인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결(약)제2010-137호)]

3 법위반시 제재 유형

제재유형	내용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기타 •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임시중지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기 전까지 공정위가 이를 일시 중지토록 함
이행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200만원(동의의결을 이행하거나 또는 취소하기 전까지)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 부과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거부방해의 경우 최대 2억원(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5천만원) • 아래 위반 유형 해당하는 경우 최대 1억원(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1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된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조사에 따른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제출한 경우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 -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행하게 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하여도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가능.

4 업무가이드(Do&Don't)

4.1 표시·광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무엇이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사업장 등의 게시물 및 간판도 표시에 해당합니다. 상품 사용설명서도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규모 광고 메일 발송도 광고에 해당합니다.

4.2 표시 광고 시 유의사항(공통)

-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 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합니다.
- 부당 표시·광고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합니다.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해야 합니다.
- 홍보물이나 광고물 작성시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생각합니다.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 광고 대상이 되는 제품과 용역의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직원들로 소규모 점검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3 비교 광고 시 유의사항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써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지도,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 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 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4.4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체크
1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까?	
2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점을 숨기거나 기만하지는 않았습니까?	
3	비교광고 시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습니까?	
4	비교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까?	
5	다른 사업자나 경쟁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노출하여 비방하지는 않았습니까?	
6	고시된 중요 정보를 모두 표시·광고 하였습니까?	
8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까?	
7	광고 내용 중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인할 내용은 없습니까?	
9	광고의 전체적, 궁극적 인상에 있어 오인할 내용은 없습니까?	
10	광고 내용 중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습니까?	

Q&A: 표시광고법

Q1 공공기관이 영리목적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광고문구에 사용한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함에 있어 광고주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광고 목적이 공익적인지 여부도 요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고 내용이 소비자오인성을 갖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최고’, ‘대한민국 1등’ 등의 표현을 붙여도 괜찮을까요?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대한민국 1등"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나 "1등"과 같은 표현을 포함한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는가요?

대법원은 여기서 소비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판시하고 있고(2017두60109판결) 공정위 심결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의미는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으며 일상적인 주의력과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오인성을 인정할 때 문제된 표시·광고의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개념이고 이론적인 설명으로는 추상적인 정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첨부



공정위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1 개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서의 하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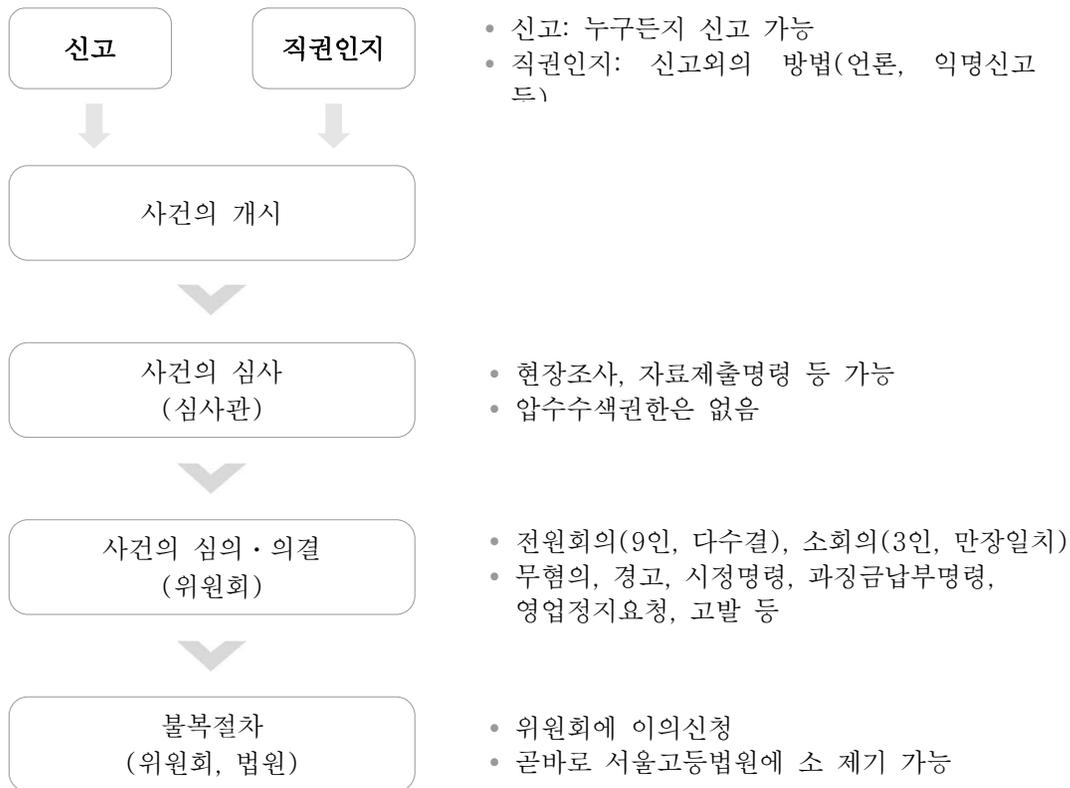
[표 26] 전원회의와 소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주심위원)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소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등 의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표 27] 용어해설

용어	설명
심결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
심사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심사관은 공정위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됩니다.
피심인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3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형

공정거래법규 위반시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 형사적 제재(징역과 벌금) 그리고 민사적 제재(손해배상책임)의 3가지 유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입니다.

제재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은 범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2~20%내에서 부과하되 과징금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20억원 내에서 부과
형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불이행 등) •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밀한 의미에서 제재는 아니지만, 법적 책임의 하나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경우가 많음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무과실책임과 손해배상액 예정제도(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법관이 명할 수 있는 제도)의 특칙이 있으며 담합의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 2024. 12. 5.

개정 2024. 12. 26.

개정 2025. 9.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와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각종 활동 및 절차, 운용조직 등을 정한 것으로서,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아트센터와 소속 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아트센터의 모든 직원 및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이하 “공정거래CP”라 한다)은 아트센터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거래CP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율준수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2장 운영조직 및 역할

제1절 사장

제4조(사장의 의무)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CP 제도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 정책임을 보장한다.

②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 저해 행위 등 공정거래CP 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④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직원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

제5조(사장의 권한)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이사 결정권한을 지닌다.

- ② 사장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한다.
- ③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④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안전감사실장으로 한다.

- ② 삭제 <2024. 12. 26.>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 1. 공정거래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 4. 기타 공정거래CP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예산 편성 및 변경 요구
 - 2. 사장의 자율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 4. 공정거래CP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 6. 자율준수협의체의 운영
 - 7. 직원의 공정거래CP 준수 여부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
 - 8. 위 제7호에 따라 확인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
 - 9.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구축
 - 10. 공정거래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 운영계획에 반영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CP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주관부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공정거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및 독립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업무수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에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

제3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협의체의 구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 활동에 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단,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가 위원장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하여 본부장급 이상으로 총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은 주관부서가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아트센터와 소속 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CP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
4. 공정거래CP 관련 리스크 점검 및 효과성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 선정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제4절 직원

제13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한다.

② 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공정거래CP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

③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 기준과 절차마련

제14조(기준과 절차마련) ① 아트센터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기준과 절차를 규정 또는 자율준수편람 등에 수록하여 모든 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아트센터는 정기적인 공정거래CP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의 공정거래CP 제도에 대한 이해를 지속해서 높이도록 한다.

제2절 자율준수의지 천명

- 제15조(자율준수의지 천명)** ① 사장은 아트센터의 공정거래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 공표하고 사장을 포함한 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한다.
- ②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직원, 협력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절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 제16조(자율준수편람)** ① 주관부서는 아트센터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직원에게 배포한다.
- ②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기준과 절차 등을 자율준수편람에 수록하고 모든 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사항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자율준수편람에 수록하고 대내·외 공개한다.
- ④ 자율준수편람은 발주, 구매, 계약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밀접한 부서에 우선하여 배포하고 설문 등을 통해 자율준수편람의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제4절 자율준수교육 실시

- 제17조(자율준수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거래CP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자를 사장과 관리자 또는 발주, 구매, 계약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밀접한 자로 한정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연간 교육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전담강사
 4. 교육내용
 5. 교육방법(온라인/오프라인)
 6. 교육 효과성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연간 교육일정
- ③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교육 전담부서에 업무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 전담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서의 업무협조 및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보강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보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⑥ 공정거래CP 교육에 대해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제5절 내부감시체계 구축

제18조(내부감시체계)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그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보고 및 조치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내부고발시스템

② 위 제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 운영결과는 사장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한다.

제19조(위험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험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위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1.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부서별로 공정거래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자료 제출
2. 위 제1호 및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심층조사

③ 위험 평가의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
3. 대상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
5.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방안

제20조(사전업무협의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주관부서는 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하여 먼저 회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연 1회 이상 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전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그 시행부서는 검토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21조(직접보고체계) ① 주관부서는 직원의 명백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위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내부고발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한다. 단, 신고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의 익명신고 등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 시행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제보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한다.

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예방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내규 제24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절 직원 제재 및 인센티브

제23조(직원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1.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아트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트센터에 손해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제1호 또는 제2호 행위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이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확인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위 제1항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CP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경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한다.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절차, 방법, 기준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상벌규정」 및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제24조(우수직원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 및 법률비용 감소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공정거래CP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공정거래 관련 징계결과에 대한 경감조치

③ 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제7절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제25조(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도모한다.

② 효과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공정거래CP에 대한 직원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 운영성과

4. 공정거래CP 관련 교육성과

5.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 발생 빈도 및 영향

- 6.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 7. 공정거래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기준과 절차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
- 8. 공정거래CP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26조(문서관리) ①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한다.

② 아트센터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 2. 체결된 계약서 및 부속서류
- 3. 외부 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등
-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된 문서 일체

③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27조(운영현황 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트센터 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9조(보칙)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내규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4. 12. 5.>

이 내규는 아트센터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4. 12. 5.>

부 칙 <2024. 12. 26.>

이 내규는 아트센터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4. 12. 26.>